

##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고시제2018-72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 승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7차) 및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8일

경상북도지사

#### I. 개발계획 변경승인

#####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면 적 : 10,965,784m<sup>2</sup>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상북도개발공사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 대표자의 성명 : 배 판 덕

#####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변경)

- 제1행정타운과 제2행정타운으로 나누어 이전기관을 수용
- 긴밀한 정보교환, 새로운 지식정보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계배치 계획
- 주간선도로변 접근성이 용이한 배치계획으로 친근하고, 개방적인 행정타운 조성
- 각 기관별 특성, 이전기관 및 종사자 근무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전기관별 의견 수렴 및 조정 과정을 통해 입지 확정
- 경상북도직속기관 및 이전 희망기관 조사에 따라 이전기관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업무시설용지 추가확보 및 업무시설 세부기능 조정

#####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10. 5. 4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 사업준공일 : 2027. 12. 31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1)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 (변경)

- 수용인구 : 100,000인
- 수용가구수 : 40,000호 (호당 2.5인 적용)

구 분		면 적 (m <sup>2</sup> )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614,648.3	40,000	100,000		
	변경	2,612,121.3	40,000	100,000		
단독주택	기정	693,257.8	2,029	5,076		
	변경	693,220.8	2,027	5,072		
필지형	기정	508,447.8	1,638	4,098	230~330	
	변경	506,407.8	1,632	4,083	230~330	
블록형	기정	184,810	391	978	330	
	변경	186,813	395	989	330	
공동주택	기정	1,921,390.5	37,971	94,924		
	변경	1,918,900.5	37,973	94,928		
60m <sup>2</sup> 이하	기정	595,321.9	15,029	37,571	82	31.0%
	변경	591,995.9	15,062	37,655	82	30.8%
60m <sup>2</sup> ~85m <sup>2</sup> 이하	기정	1,192,426.6	20,951	52,376	112	62.1%
	변경	1,193,381.6	20,923	52,303	112	62.2%
85m <sup>2</sup> 초과	기정	133,642	1,991	4,977	140	6.9%
	변경	133,523	1,988	4,970	140	7.0%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증감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0,965,784.0	10,965,784.0	100.0	100.0	-				
주거용지	소 계	2,688,619.9	2,685,774.9	24.5	24.5	감) 2,845.0				
	단독	필지형	508,447.8	506,407.8	4.6	4.6	감) 2,040.0			
		블록형	184,810.0	186,813.0	1.7	1.7	증) 2,003.0			
	공동	아파트	1,921,390.5	1,918,900.5	17.5	17.5	감) 2,490.0			
	근린생활시설		73,971.6	73,653.6	0.7	0.7	감) 318.0			
상업업무 시설용지	소 계	1,016,535.8	1,007,021.8	9.2	9.1	감) 9,514.0				
	상업용지	220,249.5	220,249.5	2.0	2.0	-				
	특화상업 업무용지	74,905.2	74,905.2	0.7	0.7	-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 계	151,580.0	151,580.0	1.4	1.4	-				
	산업시설	110,376.0	110,376.0	1.0	1.0	-				
	R&D	41,204.0	41,204.0	0.4	0.4	-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6,921,479.3	6,933,838.3	63.2	63.3	증) 12,359.0				
	공원 · 녹지 등	계	3,442,336.5	3,428,321.5	31.4	31.2	감) 14,015.0			
		공원	근린공원	1,915,587.4	1,916,798.4	17.5	17.5	증) 1,211.0	15개소	15개소
			어린이공원	69,440.8	69,259.8	0.6	0.6	감) 181.0	15개소	15개소
			소공원	18,532.7	19,884.7	0.2	0.2	증) 1,352.0	16개소	17개소
			수변공원	177,388.6	177,388.6	1.6	1.6	-	13개소	13개소
			역사공원	115,354.0	115,354.0	1.0	1.0	-	1개소	1개소
		녹지	완충녹지	95,645.0	102,302.0	0.9	0.9	증) 6,657.0	52개소	62개소
			경관녹지	263,788.5	263,043.5	2.4	2.4	감) 745.0	28개소	36개소
			연결녹지	14,126.8	14,126.8	0.1	0.1	-	6개소	6개소
		등	뿌리공원	109,184.2	109,184.2	1.0	1.0	-	1개소	1개소
			저류지	52,819.8	30,330.8	0.5	0.3	감) 22,489.0	6개소	6개소
			하천	95,003.2	95,003.2	0.9	0.9	-	2개소	2개소
			저수지	330,010.0	330,010.0	3.0	3.0	-	1개소	1개소
	공공공지		185,455.5	185,635.5	1.7	1.7	증) 180.0	22개소	24개소	
	도로	자동차도로	1,616,634.2	1,619,297.2	14.7	14.7	증) 2,663.0	313개소	310개소	
		보행자전용도로	74,437.6	86,831.6	0.7	0.8	증) 12,394.0	132개소	142개소	
		주차장	65,476.5	88,818.5	0.6	0.8	증) 23,342.0	35개소	43개소	
		광장	12,692.3	12,515.3	0.1	0.1	감) 177.0	5개소	5개소	
		테마파크	226,030.0	226,030.0	2.1	2.1	-	1개소	1개소	
		복합물류센터	34,000.0	34,000.0	0.3	0.3	-	1개소	1개소	
		양수장	3,381.2	3,381.2	0.1	0.1	-	2개소	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0,216.1	10,584.1	0.1	0.1	증) 368.0	4개소	5개소	
		주유소	7,135.5	7,135.5	0.1	0.1	-	5개소	5개소	
		교육 시설	유치원	22,196.3	22,196.3	0.2	0.2	-	8개소	8개소
			초등학교	143,269.4	143,269.4	1.3	1.3	-	8개소	8개소
			중학교	89,323.8	89,323.8	0.8	0.8	-	5개소	5개소
			고등학교	78,727.5	78,727.5	0.7	0.7	-	3개소	3개소
			대학교	86,242.0	86,242.0	0.8	0.8	-	1개소	1개소
		공공청사	352,397.4	352,397.4	3.2	3.2	-	5개소	5개소	
		복합커뮤니티시설	19,585.8	19,495.8	0.2	0.2	감) 90.0	3개소	3개소	
		문화시설	94,081.9	93,982.9	0.9	0.9	감) 99.0	4개소	4개소	
		체육시설	135,979.0	133,203.0	1.2	1.2	감) 2,776.0	2개소	3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3,613.0	12,100.0	0.1	0.1	감) 1,513.0	1개소	1개소		
종합의료시설	191,915.0	185,689.0	1.7	1.7	감) 6,226.0	3개소	3개소			
종교시설	42,846.0	41,334.0	0.4	0.4	감) 1,512.0	7개소	7개소			
한옥형 호텔	55,878.5	55,878.5	0.5	0.5	-	2개소	2개소			
친환경클러스터	99,379.8	99,379.8	0.9	0.9	-	2개소	2개소			
전기공급설비	3,704.0	3,704.0	0.1	0.1	-	2개소	2개소			
유보지	187,569.0	187,569.0	1.7	1.7	-	3개소	3개소			

가. 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① 주거유형별 용지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비 고
합 계	기정	2,614,648.3	40,000	100,000		
	변경	2,612,121.3	40,000	100,000		
단독주택	기정	693,257.8	2,029	5,076		
	변경	693,220.8	2,027	5,072		
필지형	기정	508,447.8	1,638	4,098	230~330	
	변경	506,407.8	1,632	4,083	230~330	
블록형	기정	184,810	391	978	330	
	변경	186,813.0	395	989	330	
공동주택	기정	1,921,390.5	37,971	94,924		
	변경	1,918,900.5	37,973	94,928		
60㎡이하	기정	595,321.9	15,029	37,571	82	31.0%
	변경	591,995.9	15,062	37,655	82	30.8%
60㎡~85㎡이하	기정	1,192,426.6	20,951	52,376	112	62.1%
	변경	1,193,381.6	20,923	52,303	112	62.2%
85㎡초과	기정	133,642.0	1,991	4,977	140	6.9%
	변경	133,523.0	1,988	4,970	140	7.0%

② 단독주택용지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 계	기정	693,257.8	2,029	5,076	
	변경	693,220.8	2,027	5,072	
필지형	기정	508,447.8	1,638	4,098	
	변경	506,407.8	1,632	4,083	
D-1BL	기정	18,970.7	61	153	이주자택지 (411호)
D-2BL	기정	29,926.5	99	248	
D-3BL	기정	50,508.1	171	428	
D-4BL	기정	23,362.3	80	200	
D-5BL	기정	44,977.0	88	220	
D-6BL	기정	38,737.2	73	183	
D-7BL	기정	40,088	145	363	
	변경	38,978	141	353	
D-8BL	기정	61,448	220	550	
	변경	58,926	211	528	
D-9BL	기정	52,785	184	460	
	변경	51,678	180	450	
D-10BL	기정	23,193	77	193	
	변경	27,043	92	230	
D-11BL	기정	61,101	206	515	
D-12BL	기정	63,351	234	585	
	변경	62,200	230	575	
블록형	기정	184,810	391	978	
	변경	186,813	395	989	
H-1BL	기정	28,168	60	150	
	변경	27,975	59	148	
H-2BL	기정	103,863	220	550	
	변경	106,160	225	563	
H-3BL	기정	34,640	73	183	
	변경	34,550	73	183	
H-4BL	기정	18,139	38	95	
	변경	18,128	38	95	

## ③ 공동주택용지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평균주택 규모(㎡)	용적률 (%)	비 고	
합 계	기정	1,921,390.5	37,971	94,924				
	변경	1,918,900.5	37,973	94,928				
60㎡ 이하	소계	기정	595,321.9	15,029	37,571			
		변경	591,995.9	15,062	37,655			
	A-1BL	기정	22,279.9	499	1,248	82	190	임대
	A-2BL	기정	69,155	1,855	4,637	82	220	분양
		변경	69,155	1,930	4,825	82	230	분양
	A-3BL	기정	56,400	1,513	3,782	82	220	분양
		변경	56,400	1,574	3,935	82	230	분양
	A-4BL	기정	54,170	1,452	3,629	82	220	분양
		변경	54,170	1,250	3,125	82	190	분양
	A-5BL	기정	103,207	2,768	6,920	82	220	임대
		변경	103,207	2,881	7,202	82	230	임대
	A-6BL	기정	60,172	1,614	4,035	82	220	분양
		변경	60,172	1,680	4,200	82	230	분양
	A-7BL	기정	74,019	1,715	4,288	82	190	임대
	A-7BL	변경	47,605	1,102	2,755	82	190	임대
	A-8BL	변경	23,197	536	1,340	82	190	임대
	A-8BL	기정	54,685	1,267	3,167	82	190	임대
	A-9BL	변경	54,685	1,460	3,650	82	220	임대
	A-9BL	기정	49,805	1,154	2,885	82	190	분양
	A-10BL	변경	49,805	1,150	2,875	82	190	분양
A-10BL	기정	51,429	1,192	2,980	82	190	분양	
A-11BL	변경	51,320	1,000	2,500	82	160	분양	
60㎡ ~ 85㎡ 이하	소계	기정	1,192,426.6	20,951	52,376			
		변경	1,193,381.6	20,923	52,303			
	B-1BL	기정	86,809.3	1,704	4,260	112	220	임대, 분양
	B-2BL	기정	88,447.7	1,499	3,748	112	190	분양
	B-3BL	기정	79,372.5	1,133	2,833	112	160	분양
	B-4BL	기정	59,903.4	855	2,138	112	160	분양
	B-5BL	기정	26,535.5	450	1,125	112	190	분양
	B-6BL	기정	55,901.2	1,098	2,745	112	220	분양
	B-7BL	기정	44,405.4	873	2,183	112	220	임대
	B-8BL	기정	89,567.6	1,519	3,797	112	190	분양
	B-9BL	기정	48,206	860	2,149	112	200	임대
		변경	48,206	986	2,464	112	230	임대
	B-10BL	기정	69,144	1,358	3,395	112	220	분양
		변경	69,144	1,168	2,919	112	190	분양
	B-11BL	기정	41,794	708	1,770	112	190	분양
		변경	41,794	744	1,859	112	200	분양
	B-12BL	기정	36,666	720	1,800	112	220	분양
		변경	36,666	652	1,630	112	200	분양
	B-13BL	기정	57,542	975	2,438	112	190	분양
		변경	56,416	1,108	2,770	112	220	분양
B-14BL	기정	89,719	1,521	3,802	112	190	분양	
B-14BL	변경	30,038	428	1,070	112	160	분양	
B-15BL	변경	52,725	894	2,234	112	190	분양	

구 분			면 적 (m <sup>2</sup>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평균주택 규모(m <sup>2</sup> )	용적률 (%)	비 고
60m <sup>2</sup> ~ 85m <sup>2</sup> 이하	B-15BL	기정	58,415	991	2,477	112	190	분양
	B-16BL	변경	58,415	1,146	2,864	112	220	분양
	B-16BL	기정	54,673	976	2,440	112	200	분양
	B-17BL	변경	54,673	1,070	2,674	112	220	분양
	B-17BL	기정	56,714	1,013	2,532	112	200	분양
	B-18BL	변경	64,450	1,264	3,160	112	220	분양
	B-18BL	기정	71,939	1,283	3,207	112	200	분양
	B-19BL	변경	71,949	1,220	3,050	112	190	분양
	B-19BL	기정	34,239	581	1,452	112	190	분양
	B-20BL	변경	34,239	488	1,220	112	160	분양
	B-20BL	기정	42,433	834	2,085	112	220	분양
B-21BL	변경	43,724	624	1,560	112	160	분양	
85m <sup>2</sup> 초과	소계	기정	133,642	1,991	4,977			
		변경	133,523	1,988	4,970			
	C-1BL	기정	50,392	684	1,710	140	190	분양
		변경	50,392	682	1,705	140	190	분양
	C-2BL	기정	83,250	952	2,380	140	160	분양
		변경	83,131	1,306	3,265	140	220	분양

④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42개소	73,971.6	
	변경	42개소	73,653.6	
근린 생활 시설	근생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65번지 일원	1,521.5
	근생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69번지 일원	1,442.0
	근생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50번지 일원	2,062.2
	근생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55번지 일원	1,837.8
	근생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08번지 일원	2,421.2
	근생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30번지 일원	1,930.5
	근생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34번지 일원	1,845.6
	근생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29번지 일원	1,031.6
	근생9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1번지 일원	4,139.3
	근생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19번지 일원	5,358.3
	근생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32번지	676.8
	근생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41번지	750.7
	근생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68번지	351.1
	근생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8-1번지 일원	348
	근생1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27번지 일원	893
	근생1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28번지 일원	1,983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28번지 일원	1,995
	근생1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4번지 일원	1,243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4번지 일원	1,255
	근생1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4번지 일원	1,435
	근생19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54번지 일원	2,655
	근생2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0-8번지 일원	2,085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0-8번지 일원	2,132
근생2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8-5번지 일원	1,892	
근생2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18-1번지 일원	1,970	
근생2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35-2번지 일원	1,637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근린 생활 시설	근생2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5번지 일원	384	
	근생2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3-5번지 일원	1,669	
	근생2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69-6번지 일원	1,603	
	근생2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68-2번지 일원	459	
	근생2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2-1번지 일원	1,278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2-1번지 일원	943	
	근생2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5번지 일원	989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5번지 일원	1,000	
	근생3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29-3번지 일원	2,282	
	근생3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29-3번지 일원	1,767	
	근생3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8-2번지 일원	734	
	근생3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8번지 일원	734	
	근생3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5번지 일원	348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5번지 일원	354	
	근생3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번지 일원	897	
	근생3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1번지 일원	2,073	
	근생3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38-8번지 일원	3,534	
	근생3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28-4번지 일원	1,315	
	근생3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1-6번지 일원	5,716	
	근생40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4번지 일원	1,212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4번지 일원	1,179	
	근생4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5번지 일원	1,774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5번지 일원	1,736		
근생4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29-4번지 일원	3,694		

나.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97개소	1,016,535.8	
	변경		97개소	1,007,021.8	
상업 용지	소계	기정	34개소	220,249.5	
	상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4번지 일원	8,255.9	
	상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0번지	2,156.7	
	상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2번지 일원	4,539.5	
	상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6번지 일원	3,549.7	
	상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3번지 일원	4,861.4	
	상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5번지 일원	7,832.8	
	상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6번지 일원	1,688.4	
	상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0번지 일원	5,097.1	
	상9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33번지 일원	4,236.3	
	상1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1번지 일원	3,045.6	
	상1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8번지 일원	6,190.4	
	상1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37번지 일원	5,497.1	
	상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76번지 일원	2,862.4	
	상1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80번지 일원	2,640.1	
	상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83번지 일원	3,317.9	
	상1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88번지 일원	2,978.0	
	상1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95번지 일원	28,808.6	
	상1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2번지 일원	7,746.4	
상1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25번지 일원	7,526.1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상업 용지	상2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20번지 일원	9,983.0	
	상2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30번지	5,423.1	
	상2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50-6번지 일원	12,266	
	상2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4번지 일원	6,426	
	상2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77번지 일원	4,764	
	상2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9-3번지 일원	4,022	
	상2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6번지 일원	16,680	
	상2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69번지 일원	5,210	
	상2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52번지 일원	5,215	
	상2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66번지 일원	5,093	
	상30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52번지 일원	4,123	
	상3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4번지 일원	4,123	
	상3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1-1번지 일원	5,093	
	상3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6번지 일원	9,499	
	상3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0번지 일원	9,499	
특화 상업	소계	기정	12개소	74,905.2	
	특상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59번지 일원	6,290.9	
	특상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6번지 일원	4,248.9	
	특상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1번지 일원	2,344.7	
	특상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3번지 일원	3,765.7	
	특상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8번지 일원	7,624.8	
	특상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7번지 일원	3,453.6	
	특상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1번지 일원	7,428.4	
	특상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86번지 일원	9,662.4	
	특상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93번지 일원	5,375.5	
	특상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99번지 일원	8,849.3	
	특상1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1-2번지 일원	8,241	
특상1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2번지 일원	7,620		
업무 용지	소계	기정	51개소	721,381.1	
		변경	51개소	711,867.1	
	업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4번지 일원	113,042.8	
	업2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3번지	28,855.6	
	업3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5번지 일원	4,431.4	
	업4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8번지 일원	7,668.5	
	업5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9번지 일원	24,560.4	
	업6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2번지 일원	5,252.3	
	업7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0번지 일원	13,188.0	
	업8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4번지 일원	10,876.1	
	업9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9번지 일원	9,978.3	
	업10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63번지 일원	5,780.7	
	업1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67번지 일원	5,929.8	
	업12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8번지 일원	6,543.9	
	업13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5번지	12,494.7	
	업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4번지 일원	13,465.0	
	업1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2번지 일원	12,418.2	
	업1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53번지 일원	12,599.1	
업1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32번지 일원	3,182.5		
업1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37번지 일원	3,180.5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업무 용지	업19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9번지 일원	6,025.1	
	업2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42번지 일원	7,698.2	
	업2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47번지	2,712.8	
	업2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50번지 일원	2,589.2	
	업2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58번지 일원	5,435.6	
	업2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61번지 일원	3,049.7	
	업2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31번지 일원	15,533.8	
	업2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38번지 일원	4,509.9	
	업2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40번지 일원	10,315.1	
	업2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45번지 일원	12,562.4	
	업2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49번지 일원	20,132.4	
	업3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58번지 일원	13,901.0	
	업3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4번지 일원	4,511.2	
	업3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7번지 일원	7,278.1	
	업3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70번지 일원	9,739.2	
	업3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74번지 일원	17,003.9	
	업3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58번지	2,841.1	
	업3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4번지 일원	25,852.9	
	업3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0번지	2,990.7	
	업3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018번지 일원	30,335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018번지 일원	27,486	
	업3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040-2번지 일원	12,447	
	업40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89번지 일원	79,737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89번지 일원	73,072	
	업4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81-5번지 일원	83,249	
	업4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11번지 일원	5,162	
	업4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06-3번지 일원	5,941	
	업4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03-3번지 일원	2,797	
	업4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083-7번지 일원	2,820	
	업4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04번지 일원	6,754	
	업4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20번지 일원	5,953	
업4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24-1번지 일원	5,862		
업4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20-15번지 일원	3,591		
업5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96번지 일원	4,461		
업5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09번지 일원	4,142		

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6개소		151,580	
산업 시설	소계	기정	5개소		110,376
	산업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54-2번지 일원	22,726	
	산업2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62-2번지 일원	24,351	
	산업3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08번지 일원	12,328	
	산업4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43-5번지 일원	32,812	
산업5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49번지 일원	18,159		
R&D	소계	기정	1개소		41,204
	R&D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03-1번지 일원	41,204	

라.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 (변경)

① 공원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60개소	2,298,562.2 (2,296,303.5)	( )는 도로 제외면적
	변경	61개소	2,300,944.2 (2,298,685.5)	
근린 공원	소 계	기정	15개소	1,915,587.4
		변경	15개소	1,916,798.4
	근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7번지	13,165.3
	근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4번지	56,640.3
	근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6번지	131,343.9
	근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05번지	100,883.1
	근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번지	53,562.8
	근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431-1번지 일원	19,493
	근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0번지 일원	280,424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0번지 일원	284,488
	근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번지 일원	338,577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번지 일원	334,276
	근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1-1번지 일원	294,552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1-1번지 일원	293,720
	근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81-2번지 일원	21,735
	근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38번지 일원	102,34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51번지 일원	104,621
	근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0-5번지 일원	14,577
근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6-1번지 일원	42,646	
근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43-6번지 일원	336,213	
근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2-17번지 일원	109,434	
어린이 공원	소 계	기정	15개소	69,440.8
		변경	15개소	69,259.8
	어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2번지	1,669.3
	어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92번지	1,679.4
	어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20번지	1,607.1
	어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0번지	3,145.6
	어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5번지	3,075.2
	어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84번지	2,863.2
	어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4-26번지 일원	1,500
	어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1번지 일원	1,508
	어9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13번지 일원	7,946
	어1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8-1번지 일원	13,503
	어1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8-24번지 일원	18,900
	어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54번지 일원	3,300
	어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8번지 일원	1,600
	어1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8-2번지 일원	4,348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8-2번지 일원	4,167
	어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7-2번지 일원	2,796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소공원	소 계	기정	16개소	18,532.7	
		변경	17개소	19,884.7	
	소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96번지	750.9	
	소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29번지	829.6	
	소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76번지	923.3	
	소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9번지	930.3	
	소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31번지	1,250.7	
	소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45번지	1,126.1	
	소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03번지	2,113.2	
	소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6번지	958.9	
	소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01번지	1,478.7	
	소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0-1번지 일원	1,139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0-1번지 일원	1,155	
	소1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1번지 일원	812	
	소1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1번지 일원	1,145	
	소1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18-1번지 일원	1,052	
	소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1번지 일원	1,271	
소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1번지 일원	1,365		
소1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04-1번지 일원	1,387		
소17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79번지 일원	1,336		
역사 공원	소 계	기정	1개소	115,354	
	역사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7번지 일원	115,354	
수변 공원	소 계	기정	13개소	179,647.3 (177,388.6)	( )는 도로 제외면적
	수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6번지 일원	9,672.9	
	수2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3번지	5,653.8	
	수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5번지	4,724.5	
	수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8번지	4,419.8	
	수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7번지	8,393.5	
	수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9번지	8,055.2	
	수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00번지	58,408.5	
	수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9번지	5,238.4	
	수9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48번지	6,305.7	
	수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06번지 일원	14,902.5	도로 1,304.2m <sup>2</sup> 포함
	수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07번지 일원	19,126.1	도로 954.5m <sup>2</sup> 포함
	수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31번지	31,283.4	
수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16번지	3,463.0		

② 녹지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86개소	373,560.3	
		변경	104개소	379,472.3	
완충 녹지	소 계	기정	52개소	95,645.0	
		변경	62개소	102,302.0	
	완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33번지	439.2	
	완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41번지	571.2	
완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6번지	1,073.4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완 중 녹지	완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8번지	927.9	
	완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6번지	3,254.4	
	완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7번지	1,900.1	
	완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3번지	1,285.9	
	완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85번지	4,143.8	
	완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86번지	1,569.3	
	완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87번지	1,864.1	
	완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5번지	5,911.2	
	완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6번지	6,693.1	
	완1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8번지	2,741.9	
	완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20번지	4,017.5	
	완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4번지	665.5	
	완1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5번지	511.9	
	완1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7번지	494.8	
	완1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8번지	1,081.5	
	완1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77번지	2,256.2	
	완2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78번지	2,078.6	
	완2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79번지	985.9	
	완2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0번지	311.6	
	완23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92-9번지 일원	4,077	
	완2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2-1번지 일원	2,87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2-1번지 일원	1,785	
	완2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3-3번지 일원	809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3-3번지 일원	572	
	완2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4번지 일원	2,072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4번지 일원	1,905	
	완2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6-1번지 일원	2,043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6-1번지 일원	1,882	
	완2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1-1번지 일원	811	
	완2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69번지 일원	810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69번지 일원	720	
	완30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3번지 일원	1,755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3번지 일원	1,562	
	완3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8-1번지 일원	1,774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8-1번지 일원	1,640	
	완3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2번지 일원	2,168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2번지 일원	1,899		
완3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6번지 일원	3,18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6번지 일원	1,807		
완3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18번지 일원	887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18번지 일원	2,040		
완3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3번지 일원	1,359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3번지 일원	1,147		
완3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44-1번지 일원	74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44-1번지 일원	605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완충 녹지	완3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번지 일원	1,474	
	완3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66번지 일원	1,067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66번지 일원	892	
	완3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8-2번지 일원	2,873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8-2번지 일원	2,505	
	완4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3번지 일원	2,286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3번지 일원	2,154	
	완4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4-1번지 일원	2,149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4-1번지 일원	1,941	
	완4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59-1번지 일원	472	
	완4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1-2번지 일원	746	
	완4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1번지 일원	413	
	완4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0-1번지 일원	530	
	완4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6-2번지 일원	594	
	완47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83-3번지 일원	704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8번지 일원	2,484	
	완48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1-4번지 일원	3,31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82-2번지 일원	686	
	완49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43-5번지 일원	3,582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23번지 일원	940	
	완50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7-3번지 일원	1,06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1번지 일원	1,413	
	완5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8-3번지 일원	3,589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7번지 일원	498	
	완5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02-14번지 일원	657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2번지 일원	717	
	완53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49-1번지 일원	1,636	
	완54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4번지 일원	344	
	완55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7번지 일원	1,117	
	완56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0번지 일원	611	
	완57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83-3번지 일원	704	
	완58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1-4번지 일원	3,311	
완59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43-5번지 일원	3,582		
완60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7-3번지 일원	1,061		
완61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8-3번지 일원	3,589		
완62	신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502-14번지 일원	657		
경관 녹지	소 계	기정	28개소	263,788.5	
		변경	36개소	263,043.5	
	경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6번지 일원	46,959.0	
	경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1번지	35,605.0	
	경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1번지	5,091.6	
	경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6번지 일원	15,507.8	
	경5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7번지	555.4	
	경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2번지	23,324.4	
	경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29번지	10,569.6	
	경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9번지	1,785.5	
	경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91번지	8,579.5	
	경1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3번지	1,262.6	
	경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5번지	205.0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경관 녹지	경1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89번지	1,551.6		
	경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90번지	5,779.4		
	경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5번지	1,527.0		
	경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8번지	388.3		
	경1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2번지	865.4		
	경1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3번지	170.4		
	경1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36번지 일원	7,69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36번지 일원	7,675		
	경1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4-2번지 일원	24,930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4-2번지 일원	22,879		
	경2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78-4번지 일원	10,313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78-4번지 일원	9,828		
	경2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56-21번지 일원	11,915		
	경22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208번지 일원	10,463		
	경2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99-3번지 일원	8,084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99-3번지 일원	8,095		
	경2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143-10번지 일원	15,514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143-10번지 일원	15,225		
	경2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32번지 일원	5,656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32-1번지 일원	5,656		
	경26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35-1번지 일원	3,198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13-2번지 일원	64		
	경27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51번지 일원	3,90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48-2번지 일원	76		
	경2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0번지 일원	2,396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89-1번지 일원	223		
	경29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89-1번지 일원	134		
	경30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98-1번지 일원	142		
	경31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75-1번지 일원	62		
	경32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5번지 일원	1,015		
	경33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35-1번지 일원	3,198		
	경34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51번지 일원	3,901		
	경35	신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0번지 일원	2,396		
	경36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75-4번지 일원	2,229		
	연결 녹지	소 계	기정	6개소	14,126.8	
		연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9번지	6,722.3	
연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1번지	5,241.2		
연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2번지	1,031.1		
연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3번지	986.1		
연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6번지	58.9		
연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7번지	87.2		

## ③ 뿌리공원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109,184.2	
뿌리공원	뿌리1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1번지 일원	109,184.2	

## ④ 저류시설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6개소	52,820.8	( )는 중복결정 면적 제외
	변경		6개소	38,701.8 (30,330.8)	
저류시설	저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2번지	3,102.8	
	저2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2번지	13,390.7	
	저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40번지	9,064.3	
	저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번지 일원	18,590	
	저4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번지 일원	8,371	저류조 (주36 중복결정)
	저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5-4번지 일원	5,463	
	저5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5-4번지 일원	1,564	저류조
저6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7-1번지 일원	3,209		

## ⑤ 하천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98,734.7 (95,003.2)	( )는 도로 제외면적
하천	하천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510번지 일원	90,188.8 <sup>주1)</sup>	송평천
	하천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30번지 일원	8,545.9 <sup>주2)</sup>	도양천

주1) 지구내 면적 중 하천1은 도로(3,224.6m<sup>2</sup>) 포함

주2) 지구내 면적 중 하천2는 도로(506.9m<sup>2</sup>) 포함

## ⑥ 저수지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저수지	합 계	기정	1개소	330,010	
	저수지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61번지 일원	330,010	

## ⑦ 공공공지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2개소	185,455.5	
	변경		24개소	185,635.5	
공공 공지	공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32번지	64.2	
	공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40번지	64.4	
	공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5번지	64.0	
	공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79번지	64.8	
	공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72번지	80.2	
	공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93번지	141.5	
	공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94번지	72.7	
	공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1-3번지 일원	80	
	공9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1-4번지 일원	80	
	공10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4번지 일원	80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고
공공 공지	공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7-2번지 일원	61	
	공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20번지 일원	56	
	공1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3번지 일원	56	
	공1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19-1번지 일원	80	
	공1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1-2번지 일원	54	
	공1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2번지 일원	80	
	공1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56번지	69,116.6	
	공1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5번지	11,330.3	
	공1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4번지	8,084.5	
	공2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9번지	3,085.9	
	공2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0번지	1,008.2	
	공2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57번지	91,651.2	
	공23	신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5번지 일원	100	
	공24	신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84-22번지 일원	80	

마. 도시기반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① 도로 (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445	452	90,358	91,161	1,691,071.8	1,706,128.8		
일반 도로	계	-	313	310	82,094	81,631	1,616,634.2	1,619,297.2		
	광로	소계	-	1	1	5,588	5,588	288,287.6	288,287.6	
		2	50~55	1	1	5,588	5,588	288,287.6	288,287.6	
	대로	소계	-	15	15	16,824	16,824	452,354.3	469,788.7	
		2	30	3	3	6,281	6,281	186,168.2	190,707.9	
		3	25~28	12	12	10,543	10,543	266,186.1	279,080.8	
	중로	소계	-	99	99	34,710	34,714	637,199.8	622,379.8	
		1	20~24	38	38	19,722	19,727	415,142.6	409,372.6	
		2	15~16	35	35	9,060	9,060	146,652.4	145,846.4	
		3	12~13	26	26	5,928	5,927	75,404.8	67,160.8	
	소로	소계	-	198	195	24,972	24,505	235,924.8	231,501.3	
		1	10	160	153	21,351	20,945	215,468.4	209,987.4	
		2	8	26	28	996	1,869	8,143.2	15,731.2	
		3	4~6	12	14	2,625	1,691	12,313.2	5,782.7	
	기타	-	-	-	-	-	2,867.7	7,339.8	가감속차로 및 가각부 등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132	142	8,264	9,530	74,437.6	86,831.6	
중로		소계	-	4	4	541	541	8,115.7	8,115.7	
		2	15~16	4	4	541	541	8,115.7	8,115.7	
소로		소계	-	128	138	7,723	8,989	66,321.9	78,715.9	
		1	10	43	48	4,716	5,890	47,228.5	58,951.5	
		2	8	20	21	604	668	4,840.9	5,344.9	
		3	4~6	65	69	2,403	2,431	14,252.5	14,419.5	

## ② 주차장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35개소	65,476.5		
	변경	43개소	88,818.5		
주차장	주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44번지	2,540.8		
	주2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51번지	2,171.8		
	주3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7번지	2,000.6		
	주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28번지	2,868.6		
	주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277번지	1,396.7		
	주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11번지	3,248.5		
	주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25번지	2,396.4		
	주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293번지	3,323.2		
	주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18번지	1,346.2		
	주1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91번지	1,508.7		
	주1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42번지	2,270.9		
	주1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666번지	2,415.7		
	주1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65번지	1,947.4		
	주1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76번지	1,876.1		
	주1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86번지	2,106.6		
	주1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85번지	2,234.0		
	주17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97번지	1,830.3		
	주18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6번지	2,566.4		
	주19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29번지	2,233.2		
	주20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54번지	973.3		
	주2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23번지	414.3		
	주2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67번지	520.8		
	주2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2번지 일원	1,052		
	주2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52번지 일원	1,242		
	주2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9번지 일원	1,450		
	주2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4번지 일원	1,534		
	주2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9-19번지 일원	2,850		
	주2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62번지 일원	2,065		
	주29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9번지 일원	2,468		
	주30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3번지 일원	2,468		
	주3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1번지 일원	1,158		
	주3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01-2번지 일원	1,254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01-2번지 일원	1,413	
	주3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4번지 일원	843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4번지 일원	904	
	주3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0-1번지 일원	1,502		
	주3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1-7번지 일원	1,400		
	주36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번지 일원	8,371	저류시설4 중복결정
	주37	신설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6-6번지 일원	3,131	
	주38	신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0번지 일원	1,157	
	주39	신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0-12번지 일원	1,111	
	주40	신설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21-2번지 일원	1,116	
	주41	신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27-1번지 일원	1,107	
주42	신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50-1번지 일원	2,849		
주43	신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84-5번지 일원	4,280		

## ③ 광장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5개소	12,692.3	
	변경		5개소	12,515.3	
광장	광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74번지	2,581.5	
	광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48번지	2,875.8	
	광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77번지 일원	1,600	
	광4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5-5번지 일원	4,381	
	광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5번지 일원	1,254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5번지 일원	1,077		

## ④ 테마파크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226,030	
테마 파크	테마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번지 일원	226,030	

## ⑤ 복합물류센터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34,000	
복합 물류센터	물류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2-4번지 일원	34,000	

## ⑥ 양수장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3,381.2	
양수장	양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08번지	2,776.8	
	양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93번지	604.4	

## ⑦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4개소	10,216.1	
	변경		5개소	10,584.1	
오수 중계 펌프장	오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90번지	2,537.9	
	오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28번지	2,778.2	
	오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51번지 일원	2,540	
	오4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51번지 일원	2,540	
	오4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6번지 일원	2,360	
	오5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6번지 일원	2,360	
	오3	신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59-12번지 일원	368	

## ⑧ 주유소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5개소	7,135.5	
	변경		5개소	7,135.5	
주유소	주유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89번지	2,317.8	
	주유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517번지	1,198.9	
	주유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4번지	1,212.8	
	주유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2번지 일원	1,205	선형일부조정 (면적변경없음)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2번지 일원	1,205	
주유5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36-4번지 일원	1,201		

## ⑨ 교육시설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5개소	419,759.0	
유치원	소 계	기정	8개소	22,196.3	
	유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번지	1,345.5	
	유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18번지	2,664.9	
	유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6번지	2,107.9	
	유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3번지 일원	3,067	
	유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4번지 일원	3,826	
	유6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0-1번지 일원	3,021	
	유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95-2번지 일원	3,107	
	유8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86-1번지 일원	3,057	선형일부조정 (면적변경없음)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86-1번지 일원	3,057		
초등학교	소 계	기정	8개소	143,269.4	
	초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119번지	15,076.0	
	초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59번지	15,112.4	
	초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56-3번지 일원	19,514	
	초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84-2번지 일원	17,575	
	초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9-19번지 일원	18,815	
	초6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9번지 일원	19,608	
	초7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6번지 일원	19,719	
	초8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5번지 일원	17,850	
중학교	소 계	기정	5개소	89,323.8	
	중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60번지	17,084.8	
	중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90-2번지 일원	17,077	
	중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800번지 일원	18,987	
	중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6-11번지 일원	18,643	
	중5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3-1번지 일원	17,532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고등 학교	소 계	기정	3개소	78,727.5	
	고1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번지	18,013.5	
	고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8번지 일원	22,450	
	고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411-2번지 일원	38,264	특수고
대학교	소 계	기정	1개소	86,242	
	대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34번지 일원	86,242	

⑩ 공공청사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5개소	352,397.4	
공공 청사	공청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55번지	245,000.0	도청사
	공청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88번지	46,272.8	경찰청
	공청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57번지	10,000.0	대외통상관
	공청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61번지	49,469.6	교육청
	공청5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1번지 일원	1,655	지구대(파출소) 선형일부조정 (면적변경없음)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1번지 일원	1,655		

⑪ 복합커뮤니티시설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3개소	19,585.8	
		변경	3개소	19,495.8	
복합 커뮤니티 시설	커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81번지 일원	9,116.8	
	커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71번지 일원	5,210	
	커3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0-1번지 일원	5,259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0-1번지 일원	5,169	

⑫ 문화시설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4개소	94,081.9	
		변경	4개소	93,982.9	
문화 시설	문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718번지	25,641.8	관광·레저 컴플렉스 및 상업 등 복합용도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번지	20,249.3	생태·예술 컴플렉스 및 상업 등 복합용도
	문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번지	22,396.8	도서관
	문4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72-1번지 일원	25,794	정보·산업 컴플렉스 및 터미널·상업 등 복합용도
변경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72-1번지 일원	25,695		

## ⑬ 체육시설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135,979		
	변경	3개소	133,203		
체육 시설	체육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05번지 일원	51,150	스포츠컴플렉스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05번지 일원	51,621	
	체육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018-1번지 일원	84,829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018-1번지 일원	33,709	
	체육3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61번지 일원	47,873	

## ⑭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13,613	
	변경	1개소	12,100	
청소년 수련시설	청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87번지 일원	13,613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87번지 일원	12,100

## ⑮ 종합의료시설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3개소	191,915		
	변경	3개소	185,689		
종합 의료 시설	의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번지 일원	140,790	복합메디컬 컴플렉스
		변경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번지 일원	136,793	
	의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12-4번지 일원	24,952	
	의3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75-4번지 일원	26,173	
		변경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75-4번지 일원	23,944	

## ⑯ 종교용지 (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7개소	42,846.0	
	변경	7개소	41,334.0	
종교 시설	종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06번지	4,972.0
	종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07번지	1,694.1
	종3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8번지	5,387.9
	종4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89번지	8,742.0
	종5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3-1번지 일원	9,865
		변경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3-1번지 일원	8,353
	종6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92-3번지 일원	3,995
종7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06번지 일원	8,190	

## ⑰ 한옥형호텔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55,878.5	
한옥형 호텔	호텔1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295번지	16,964.5
	호텔2	기정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51-6번지 일원	38,914

⑱ 친환경클러스터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99,379.8	
친환경 클러스터	환경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4번지	67,003.9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자원회수시설, 유기성바이오 가스화시설)
	환경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427번지	32,375.9	공공 하수처리시설

⑲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3,704	
전기공급 설비	전기1	기정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806번지	144	케이블헤드
	전기2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79번지 일원	3,560	변전소

바. 유보지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m <sup>2</sup> )	비 고
합 계		기정	3개소	187,569	
유보지	유보1	기정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78-2번지 일원	7,242	
	유보2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1-6번지 일원	75,251	
	유보3	기정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2-1번지 일원	105,076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1) 도로시설(사업시행자 개설) (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445	452	90,358	91,161	1,691,071.8	1,706,128.8		
일반 도로	계		-	313	310	82,094	81,631	1,616,634.2	1,619,297.2	
	광로	소계	-	1	1	5,588	5,588	288,287.6	288,287.6	
		2	50~55	1	1	5,588	5,588	288,287.6	288,287.6	
	대로	소계	-	15	15	16,824	16,824	452,354.3	469,788.7	
		2	30	3	3	6,281	6,281	186,168.2	190,707.9	
		3	25~28	12	12	10,543	10,543	266,186.1	279,080.8	
	중로	소계	-	99	99	34,710	34,714	637,199.8	622,379.8	
		1	20~24	38	38	19,722	19,727	415,142.6	409,372.6	
		2	15~16	35	35	9,060	9,060	146,652.4	145,846.4	
		3	12~13	26	26	5,928	5,927	75,404.8	67,160.8	
	소로	소계	-	198	195	24,972	24,505	235,924.8	231,501.3	
		1	10	160	153	21,351	20,945	215,468.4	209,987.4	
		2	8	26	28	996	1,869	8,143.2	15,731.2	
		3	4~6	12	14	2,625	1,691	12,313.2	5,782.7	
	기타		-	-	-	-	-	2,867.7	7,339.8	가감속차로 및 가각부 등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132	142	8,264	9,530	74,437.6	86,831.6		
	중로	소계	-	4	4	541	541	8,115.7	8,115.7	
		2	15~16	4	4	541	541	8,115.7	8,115.7	
	소로	소계	-	128	138	7,723	8,989	66,321.9	78,715.9	
		1	10	43	48	4,716	5,890	47,228.5	58,951.5	
		2	8	20	21	604	668	4,840.9	5,344.9	
		3	4~6	65	69	2,403	2,431	14,252.5	14,419.5	

(2) 상·하수도시설 (변경)

○ 상수관로 시설계획

구분	관로연장 (m)	비고
기정	96,237	
변경	116,419	

○ 우수관로 시설계획

구분	관로연장 (m)	암거연장 (m)	비고
기정	80,942	18,064	
변경	76,689	16,722	

○ 오수관로 시설계획

구분	관로연장 (m)	비고
기정	62,404	
변경	60,105	

(3) 개발예정지구 밖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변경없음)

가. 진입도로 (변경없음)

구분	노선	구간	사업량	사업비 (억원)	시행 시기	시행 주체	재원 분담
합계			L=72.34km	12,634			
①	안동~도청(1)	국도34호선~신도시~하회마을 (지방도914호선)	L=5.0km B=19.5~27.5m	808	2016년 (1단계사업 준공시까지)	경상북도	국비:50% 도비:50%
②	예천~도청(1)	예천소재지~신도시 (지방도927호선)	L=8.5km B=19.5m	1,063			국비:50% 도비:50%
③	예천~도청(2)	국도28호선~신도시	L=4.6km B=20m	480	2022년 (2단계사업 준공시까지)	경상북도	국비:50% 도비:50%
④	의성~도청	구담~신도시 (지방도927호선)	L=1.9km B=25m	140			지방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시 협의
⑤	남안동IC~도청	풍천면소재지~신도시	L=0.5km B=25m	38			경상북도
⑥	안동터미널~신도시	안동터미널~신도시	L=14.2km B=25m	3,200	2027년 (3단계사업 준공시까지)	지방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시 협의	
⑦	산업도로	신도시~중부내륙고속	L=36.24km B=25m	6,830			
⑧	안동~도청(2)	지방도916~신도시	L=1.4km B=10m	75	2017~2019	경상북도	도·안동시·사업시행자 (협의를) <sup>주1)</sup>

주1) ⑧ 안동~도청(2) 협의율 : 공사 및 설계비 - 경상북도 50%, 사업시행자 50%  
보상비 - 안동시 100%

나. 상수도 (변경없음)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부담주체	비고
합 계	-	680		
송수관로 (신설)	용상1,2 정수장~배수지 D=700mm , L=34.27km	330	사업시행자	지구외
정수장 (개량)	용상1 정수장(Q=30,000m <sup>3</sup> /일) 개량	150	사업시행자	지구외
배수지 (신설)	V=21,000m <sup>3</sup>	200	사업시행자	지구외

다. 하천 (변경없음)

사업내용		사업규모	유지용수(m <sup>3</sup> )	사업비(억원)	부담주체	비고
합 계		-	26,000	409		
①	물순환형 하천정비	축제 및 호안 L=9.61km 자전거도로 L=9.6km 교량 8개소	10,000	289	국비:60% 도비:40%	
②	생태하천 복원사업	생태하천 조성 L=2.0km 수로폭 = 5~17m 유지용수 공급시설 (L=3.7km) 1식	16,000	120	국비:60% 도비:40%	

(4)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변경)

- 기정 : 변압기 설비용량은 464,823kVA로 예측되었으며, 최대전력수요는 418,340kW로 예측
- 변경 : 변압기 설비용량은 484,242kVA로 예측되었으며, 최대전력수요는 435,817kW로 예측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

- 기정 : 도시가스 수요량은 총 182,811천Nm<sup>3</sup>/년이며, 난방용이 170,569천Nm<sup>3</sup>/년, 취사용이 12,242천Nm<sup>3</sup>/년으로 예측
- 변경 : 도시가스 수요량은 총 173,119천Nm<sup>3</sup>/년이며, 난방용이 160,948천Nm<sup>3</sup>/년, 취사용이 12,170천Nm<sup>3</sup>/년으로 예측

다. 열공급계획 (변경)

- 기정 : 지구내 연간열부하는 1,423,230Gcal/년, 최대열부하는 574.8Gcal/hr로 예측
- 변경 : 지구내 연간열부하는 1,342,954Gcal/년, 최대열부하는 599.4Gcal/hr로 예측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신도시추진단(☎054-880-4232), 안동시 신도청전략사업단(☎054-840-5831), 예천군 건축도시과(☎054-650-6241)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054-650-3184)에 비치

II.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명 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면 일원
- 면 적 : 5,564,014.6㎡ (사업지구 전체 : 10,965,784㎡)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상북도개발공사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 대표자의 성명 : 배 판 덕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15. 1.
- 사업준공일 : 2022. 12. (2단계 사업준공)

[공종별 소요기간]

구 분	사업기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015~2022	[Shaded]								
1. 조사설계	2015~2017	[Shaded]								
2. 부지조성	2018~2022	[Shaded]								
1) 토 공	2018~2022	[Shaded]								
2) 하수도	2018~2022	[Shaded]								
3) 도 로	2018~2022	[Shaded]								
4) 상수도	2018~2022	[Shaded]								
5) 구조물	2018~2022	[Shaded]								
6) 조경공	2019~2022	[Shaded]								
7) 전기 및 신호등	2019~2022	[Shaded]								
8) 부대공	2018~2022	[Shaded]								
3. 특수시설물	2018~2022	[Shaded]								
4. 지구 외 기반시설	2018~2022	[Shaded]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관계도면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관계도면 및 시행지침 게재생략)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go.kr>)에 게재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신도시추진단(☎054-880-4232), 안동시 신도청전략사업단(☎054-840-5831), 예천군 건축도시과(☎054-650-6241) 및 경상북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054-650-3184)에 비치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564,014.6	-	5,564,014.6	10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3,045,917.0	3,045,917.0	54.75	
	일반주거지역	-	증) 2,790,433.0	2,790,433.0	50.16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034,962.0	1,034,962.0	18.6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36,365.0	336,365.0	6.0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419,106.0	1,419,106.0	25.51	
	준주거지역	-	증) 255,484.0	255,484.0	4.59	
상업 지역	소 계	-	증) 257,888.0	257,888.0	4.63	
	일반상업지역	-	증) 221,575.0	221,575.0	3.98	
	근린상업지역	-	증) 36,313.0	36,313.0	0.65	
녹지 지역	소 계	-	증) 2,260,209.6	2,260,209.6	40.62	
	생산녹지지역	-	증) 330,010.0	330,010.0	5.93	
	자연녹지지역	-	증) 1,930,199.6	1,930,199.6	34.69	
관리 지역	소 계	3,654,100.0	감) 3,654,100.0	-	-	
	계획관리지역	3,654,100.0	감) 3,654,100.0	-	-	
농림지역	1,909,914.6	감) 1,909,914.6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총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78,054.0	200%이하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84,732.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823,232.0	300%이하	
			준주거지역	139,989.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6,165.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1,792.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1,730,769.0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9,367.0	100%이하	
		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56,908.0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633.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95,874.0	300%이하	
			준주거지역	115,495.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135,410.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34,521.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199,430.6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320,643.0	100%이하				

※세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다. 안동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713,267.8	-	3,713,267.8	10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1,720,112.0	1,720,112.0	46.32	
	일반주거지역	-	증) 1,670,549.0	1,670,549.0	44.98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595,389.0	595,389.0	16.0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83,014.0	283,014.0	7.6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792,146.0	792,146.0	21.33	
	준주거지역	-	증) 49,563.0	49,563.0	1.34	
상업 지역	소계	-	증) 141,580.0	141,580.0	3.81	
	일반상업지역	-	증) 125,778.0	125,778.0	3.39	
	근린상업지역	-	증) 15,802.0	15,802.0	0.42	
녹지 지역	소계	-	증) 1,851,575.8	1,851,575.8	49.87	
	생산녹지지역	-	증) 330,010.0	330,010.0	8.89	
	자연녹지지역	-	증) 1,521,565.8	1,521,565.8	40.98	
관리 지역	소계	2,372,539.5	감) 2,372,539.5	-	-	
	계획관리지역	2,372,539.5	감) 2,372,539.5	-	-	
농림지역	1,340,728.3	감) 1,340,728.3	-	-		

라. 안동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원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3,106.0	200%이하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57,213.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71,303.0	300%이하	
			준주거지역	19,037.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6,165.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1,254.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1,345,094.5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9,367.0	100%이하	
		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2,283.0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801.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20,843.0	300%이하	
			준주거지역	30,526.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39,613.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14,548.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176,471.3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320,643.0	100%이하				

※ 세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마. 예천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50,746.8	-	1,850,746.8	100.00	
주거 지역	-	증) 1,325,805.0	1,325,805.0	71.64	
일반주거지역	-	증) 1,119,884.0	1,119,884.0	60.5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39,573.0	439,573.0	23.7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351.0	53,351.0	2.88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26,960.0	626,960.0	33.88	
준주거지역	-	증) 205,921.0	205,921.0	11.13	
상업 지역	-	증) 116,308.0	116,308.0	6.28	
일반상업지역	-	증) 95,797.0	95,797.0	5.18	
근린상업지역	-	증) 20,511.0	20,511.0	1.10	
녹지 지역	-	증) 408,633.8	408,633.8	22.08	
자연녹지지역	-	증) 408,633.8	408,633.8	22.08	
관리 지역	1,281,560.5	감) 1,281,560.5	-	-	
계획관리지역	1,281,560.5	감) 1,281,560.5	-	-	
농림지역	569,186.3	감) 569,186.3	-	-	

바. 예천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 적 륜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일원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94,948.0	200%이하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27,519.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51,929.0	300%이하	
			준주거지역	120,952.0	500%이하	
			근린상업지역	538.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385,674.5	100%이하	
		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4,625.0	200%이하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25,832.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75,031.0	300%이하	
			준주거지역	84,969.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95,797.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19,973.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22,959.3	100%이하	

※세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 사. 안동시 총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520,912,493.9	-	1,520,912,493.9	100.00	
주거 지역	소계	13,143,989.9	증) 1,720,112.0	14,864,101.9	0.98	
	전용주거지역	185,654.0	-	185,654.0	0.01	
	제1종전용주거지역	185,654.0	-	185,654.0	0.01	
	일반주거지역	12,261,230.0	증) 1,670,549.0	13,931,779.0	0.92	
	제1종일반주거지역	1,366,417.9	증) 595,389.0	1,961,806.9	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60,616.2	증) 283,014.0	11,043,630.2	0.73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195.9	증) 792,146.0	926,341.9	0.06	
	준주거지역	697,105.9	증) 49,563.0	746,668.9	0.05	
상업 지역	소계	1,753,618.8	증) 141,580.0	1,895,198.8	0.12	
	일반상업지역	1,593,718.7	증) 125,778.0	1,719,496.7	0.11	
	근린상업지역	159,900.1	증) 15,802.0	175,702.1	0.01	
공업 지역	소계	1,942,867.0	-	1,942,867.0	0.13	
	일반공업지역	1,805,008.0	-	1,805,008.0	0.12	
	준공업지역	137,859.0	-	137,859.0	0.01	
녹지 지역	소계	58,176,030.6	증) 1,851,575.8	60,027,606.4	3.95	
	보전녹지지역	2,505,922.0	-	2,505,922.0	0.17	
	생산녹지지역	2,424,847.4	증) 330,010.0	2,754,857.4	0.18	
	자연녹지지역	53,245,261.2	증) 1,521,565.8	54,766,827.0	3.60	
관리 지역	소계	454,142,853.9	감) 2,372,539.5	451,770,314.4	29.70	
	보전관리지역	132,469,835.0	-	132,469,835.0	8.71	
	생산관리지역	108,427,674.0	-	108,427,674.0	7.13	
	계획관리지역	213,245,344.9	감) 2,372,539.5	210,872,805.4	13.86	
농림지역		750,516,595.7	감) 1,340,728.3	749,175,867.4	49.26	
자연환경보전지역		241,236,538.0	-	241,236,538.0	15.86	

주1) 기정은 경상북도 고시 제2015-478호 (2015.12.31.)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6-154호 (2016.6.20.)기준

## 아. 예천군 총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60,712,378.8	-	660,712,378.8	100.0	
주거 지역	소계	4,631,157.6	증) 1,325,805.0	5,956,962.6	0.90	
	일반주거지역	4,092,930.9	증) 1,119,884.0	5,212,814.9	0.79	
	제1종일반주거지역	1,379,522.7	증) 439,573.0	1,819,095.7	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9,520.3	증) 53,351.0	2,392,871.3	0.36	
	제3종일반주거지역	373,887.9	증) 626,960.0	1,000,847.9	0.15	
	준주거지역	538,226.7	증) 205,921.0	744,147.7	0.11	
상업 지역	소계	718,212.2	증) 116,308.0	834,520.2	0.13	
	일반상업지역	617,545.6	증) 95,797.0	713,342.6	0.11	
	근린상업지역	100,666.6	증) 20,511.0	121,177.6	0.02	
공업 지역	소계	148,593.0	-	148,593.0	0.02	
	일반공업지역	148,593.0	-	148,593.0	0.02	
녹지 지역	소계	8,999,117.0	증) 408,633.8	9,407,750.8	1.42	
	생산녹지지역	347,720.0	-	347,720.0	0.05	
	자연녹지지역	8,651,397.0	증) 408,633.8	9,060,030.8	1.37	
관리 지역	소계	318,211,017.2	감) 1,281,560.5	316,929,456.7	47.97	
	보전관리지역	134,184,381.0	-	134,184,381.0	20.31	
	생산관리지역	48,204,705.0	-	48,204,705.0	7.30	
	계획관리지역	135,821,931.2	감) 1,281,560.5	134,540,370.7	20.36	
농림지역		327,416,281.8	감) 569,186.3	326,847,095.5	49.47	
자연환경보전지역		588,000.0	-	588,000.0	0.09	

주1) 기정은 경상북도 고시 제2017-101호 (2017.4.13) 기준

②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방재시설

가. 저수지

○ 저수지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30,010	330,010		
신설	1	저수지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61 일원	-	증) 330,010	330,010		(안동1)

○ 안동시 저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30,010	330,010		
신설	1	저수지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61 일원	-	증) 330,010	330,010		

○ 안동시 저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저수지	· 저수지 신설(A=330,010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	증) 5,564,014.6	5,564,014.6	

나. 안동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동시 풍천면 일원	-	증) 3,713,267.8	3,713,267.8	

○ 안동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A=3,713,267.8m <sup>2</sup> (증 : 3,713,267.8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다.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천군 호명면 일원	-	증) 1,850,746.8	1,850,746.8	

○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경북도청이전신도시(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A=1,850,746.8m <sup>2</sup> (증 : 1,850,746.8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④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564,014.6	-	5,564,014.6	10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3,045,917.0	3,045,917.0	54.75	
	일반주거지역	-	증) 2,790,433.0	2,790,433.0	50.16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034,962.0	1,034,962.0	18.6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36,365.0	336,365.0	6.0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419,106.0	1,419,106.0	25.51	
	준주거지역	-	증) 255,484.0	255,484.0	4.59	
상업 지역	소 계	-	증) 257,888.0	257,888.0	4.63	
	일반상업지역	-	증) 221,575.0	221,575.0	3.98	
	근린상업지역	-	증) 36,313.0	36,313.0	0.65	
녹지 지역	소 계	-	증) 2,260,209.6	2,260,209.6	40.62	
	생산녹지지역	-	증) 330,010.0	330,010.0	5.93	
	자연녹지지역	-	증) 1,930,199.6	1,930,199.6	34.69	
관리 지역	소 계	3,654,100.0	감) 3,654,100.0	-	-	
	계획관리지역	3,654,100.0	감) 3,654,100.0	-	-	
농림지역	1,909,914.6	감) 1,909,914.6	-	-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총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78,054.0	200%이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84,732.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823,232.0	300%이하	
			준주거지역	139,989.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6,165.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1,792.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1,730,769.0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9,367.0	100%이하	
		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56,908.0	200%이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51,633.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95,874.0	300%이하	
			준주거지역	115,495.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135,410.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34,521.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199,430.6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320,643.0	100%이하	

※세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3) 안동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713,267.8	-	3,713,267.8	10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1,720,112.0	1,720,112.0	46.32
	일반주거지역	-	증) 1,670,549.0	1,670,549.0	44.98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595,389.0	595,389.0	16.0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283,014.0	283,014.0	7.62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792,146.0	792,146.0	21.33
	준주거지역	-	증) 49,563.0	49,563.0	1.34
상업 지역	소계	-	증) 141,580.0	141,580.0	3.81
	일반상업지역	-	증) 125,778.0	125,778.0	3.39
	근린상업지역	-	증) 15,802.0	15,802.0	0.42
녹지 지역	소계	-	증) 1,851,575.8	1,851,575.8	49.87
	생산녹지지역	-	증) 330,010.0	330,010.0	8.89
	자연녹지지역	-	증) 1,521,565.8	1,521,565.8	40.98
관리 지역	소계	2,372,539.5	감) 2,372,539.5	-	-
	계획관리지역	2,372,539.5	감) 2,372,539.5	-	-
농림지역	1,340,728.3	감) 1,340,728.3	-	-	

4) 안동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 적 륜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원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3,106.0	200%이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57,213.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71,303.0	300%이하		
		준주거지역	19,037.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86,165.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1,254.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1,345,094.5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9,367.0	100%이하			
	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12,283.0	200%이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801.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20,843.0	300%이하		
		준주거지역	30,526.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39,613.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14,548.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176,471.3	100%이하			
생산녹지지역	320,643.0	100%이하				

※세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5) 예천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50,746.8	-	1,850,746.8	10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1,325,805.0	1,325,805.0	71.64	
	일반주거지역	-	증) 1,119,884.0	1,119,884.0	60.5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39,573.0	439,573.0	23.7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351.0	53,351.0	2.88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26,960.0	626,960.0	33.88	
	준주거지역	-	증) 205,921.0	205,921.0	11.13	
상업 지역	소 계	-	증) 116,308.0	116,308.0	6.28	
	일반상업지역	-	증) 95,797.0	95,797.0	5.18	
	근린상업지역	-	증) 20,511.0	20,511.0	1.10	
녹지 지역	소 계	-	증) 408,633.8	408,633.8	22.08	
	자연녹지지역	-	증) 408,633.8	408,633.8	22.08	
관리 지역	소 계	1,281,560.5	감) 1,281,560.5	-	-	
	계획관리지역	1,281,560.5	감) 1,281,560.5	-	-	
농림지역	569,186.3	감) 569,186.3	-	-		

6) 예천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m <sup>2</sup>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일원	계획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94,948.0	200%이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27,519.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51,929.0	300%이하	
			준주거지역	120,952.0	500%이하	
			근린상업지역	538.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385,674.5	100%이하	
		농림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4,625.0	200%이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25,832.0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75,031.0	300%이하	
			준주거지역	84,969.0	500%이하	
			일반상업지역	95,797.0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	19,973.0	900%이하	
			자연녹지지역	22,959.3	100%이하	

※ 세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7) 안동시 총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520,912,493.9	-	1,520,912,493.9	100.00	
주거 지역	소계	13,143,989.9	증) 1,720,112.0	14,864,101.9	0.98
	전용주거지역	185,654.0	-	185,654.0	0.01
	제1종전용주거지역	185,654.0	-	185,654.0	0.01
	일반주거지역	12,261,230.0	증) 1,670,549.0	13,931,779.0	0.92
	제1종일반주거지역	1,366,417.9	증) 595,389.0	1,961,806.9	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60,616.2	증) 283,014.0	11,043,630.2	0.73
	제3종일반주거지역	134,195.9	증) 792,146.0	926,341.9	0.06
준주거지역	697,105.9	증) 49,563.0	746,668.9	0.05	
상업 지역	소계	1,753,618.8	증) 141,580.0	1,895,198.8	0.12
	일반상업지역	1,593,718.7	증) 125,778.0	1,719,496.7	0.11
	근린상업지역	159,900.1	증) 15,802.0	175,702.1	0.01
공업 지역	소계	1,942,867.0	-	1,942,867.0	0.13
	일반공업지역	1,805,008.0	-	1,805,008.0	0.12
	준공업지역	137,859.0	-	137,859.0	0.01
녹지 지역	소계	58,176,030.6	증) 1,851,575.8	60,027,606.4	3.95
	보전녹지지역	2,505,922.0	-	2,505,922.0	0.17
	생산녹지지역	2,424,847.4	증) 330,010.0	2,754,857.4	0.18
	자연녹지지역	53,245,261.2	증) 1,521,565.8	54,766,827.0	3.60
관리 지역	소계	454,142,853.9	감) 2,372,539.5	451,770,314.4	29.70
	보전관리지역	132,469,835.0	-	132,469,835.0	8.71
	생산관리지역	108,427,674.0	-	108,427,674.0	7.13
	계획관리지역	213,245,344.9	감) 2,372,539.5	210,872,805.4	13.86
농림지역	750,516,595.7	감) 1,340,728.3	749,175,867.4	49.26	
자연환경보전지역	241,236,538.0	-	241,236,538.0	15.86	

주1) 기정은 경상북도 고시 제2015-478호 (2015.12.31.)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6-154호 (2016.6.20.)기준

8) 예천군 총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660,712,378.8	-	660,712,378.8	100.0	
주거 지역	소계	4,631,157.6	증) 1,325,805.0	5,956,962.6	0.90
	일반주거지역	4,092,930.9	증) 1,119,884.0	5,212,814.9	0.79
	제1종일반주거지역	1,379,522.7	증) 439,573.0	1,819,095.7	0.2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9,520.3	증) 53,351.0	2,392,871.3	0.36
	제3종일반주거지역	373,887.9	증) 626,960.0	1,000,847.9	0.15
	준주거지역	538,226.7	증) 205,921.0	744,147.7	0.11
상업 지역	소계	718,212.2	증) 116,308.0	834,520.2	0.13
	일반상업지역	617,545.6	증) 95,797.0	713,342.6	0.11
	근린상업지역	100,666.6	증) 20,511.0	121,177.6	0.02
공업 지역	소계	148,593.0	-	148,593.0	0.02
	일반공업지역	148,593.0	-	148,593.0	0.02
녹지 지역	소계	8,999,117.0	증) 408,633.8	9,407,750.8	1.42
	생산녹지지역	347,720.0	-	347,720.0	0.05
	자연녹지지역	8,651,397.0	증) 408,633.8	9,060,030.8	1.37
관리 지역	소계	318,211,017.2	감) 1,281,560.5	316,929,456.7	47.97
	보전관리지역	134,184,381.0	-	134,184,381.0	20.31
	생산관리지역	48,204,705.0	-	48,204,705.0	7.30
	계획관리지역	135,821,931.2	감) 1,281,560.5	134,540,370.7	20.36
농림지역	327,416,281.8	감) 569,186.3	326,847,095.5	49.47	
자연환경보전지역	588,000.0	-	588,000.0	0.09	

주1) 기정은 경상북도 고시 제2017-101호 (2017.4.13) 기준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43	43,123	711,814.6	136	27,619	404,450.1	50	8,135	154,017.7	57	7,369	146,028.4	
일반 도로	계	165	37,595	661,314.6	111	23,539	363,639.1	31	7,628	149,965.7	23	6,428	140,391.4
	대로	6	6,908	199,079.1	-	-	-	1	2,770	83,385.7	5	4,138	115,663.4
	중로	44	16,202	315,407.1	20	11,024	238,489.1	13	3,389	54,224.0	11	1,789	22,694.0
	소로	115	14,485	139,510.0	91	12,515	125,150.0	17	1,469	12,356.0	7	501	2,004.0
	기타	-	-	7,318.4	-	-	-	-	-	-	-	-	-
보행자 도로	계	78	5,528	50,500	25	4,080	40,811	19	507	4,052	34	941	5,637
	소로	78	5,528	50,500	25	4,080	40,811	19	507	4,052	34	941	5,637

※ 기타는 가감속차로 및 각각포함 면적임

○ 안동시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128	23,910	419,371.8	52	12,167	190,914.2	28	6,718	134,577.7	48	5,025	88,067.4	
일반 도로	계	83	20,901	392,572.8	38	10,050	169,744.2	24	6,573	133,421.7	21	4,278	83,564.4
	대로	5	4,995	145,066.1	-	-	-	1	2,770	83,385.7	4	2,225	61,710.4
	중로	30	9,764	185,470.2	9	5,836	127,604.2	11	2,376	38,016.0	10	1,552	19,850.0
	소로	48	6,142	56,164.0	29	4,214	42,140.0	12	1,427	12,020.0	7	501	2,004.0
	기타	-	-	5,842.5	-	-	-	-	-	-	-	-	-
보행자 도로	계	45	3,009	26,799	14	2,117	21,170	4	145	1,156	27	747	4,473
	소로	45	3,009	26,799	14	2,117	21,170	4	145	1,156	27	747	4,473

※ 기타는 가감속차로 및 각각포함 면적임

○ 예천군 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116	19,213	292,442.8	84	15,452	213,535.9	22	1,417	19,440.0	10	2,344	57,991.0	
일반 도로	계	83	16,694	268,741.8	73	13,489	193,894.9	7	1,055	16,544.0	3	2,150	56,827.0
	대로	2	1,913	53,983.0	-	-	-	-	-	-	2	1,913	53,983.0
	중로	14	6,438	129,936.9	11	5,188	110,884.9	2	1,013	16,208.0	1	237	2,844.0
	소로	67	8,343	83,346.0	62	8,301	83,010.0	5	42	336.0	-	-	-
	기타	-	-	1,475.9	-	-	-	-	-	-	-	-	-
보행자 도로	계	33	2,519	23,701	11	1,963	19,641	15	362	2,896	7	194	1,164
	소로	33	2,519	23,701	11	1,963	19,641	15	362	2,896	7	194	1,164

※ 기타는 가감속차로 및 각각포함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3	30		2,770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2,770	대로 2-2	대로 2-1	일반도로			(안동)
신설	대로	3	6	28		1,092						
	대로	3	6	28	보조간선도로	437	대로 3-6	대로 2-3	일반도로			(안동) 시점은 예천 대로 3-6
	대로	3	6	28	보조간선도로	655	대로 3-4	대로 3-6	일반도로			(예천) 종점은 안동 대로 3-6
신설	대로	3	7	28		836						
	대로	3	7	28	보조간선도로	836	대로 3-3	대로 2-3	일반도로			(안동)
신설	대로	3	8	25		692						
	대로	3	8	25	집산도로	692	대로 3-4	대로 3-2	일반도로			(안동)
신설	대로	3	11	25		260						
	대로	3	9	25	집산도로	260	대로 2-3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20	일반도로			(안동)
신설	대로	3	12	28		1,258						
	대로	3	7	28	집산도로	1,258	대로 3-6	대로 2-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12	21		288						
	중로	1	11	21	집산도로	288	중로 1-6	대로 3-7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1	13	21		162						
	중로	1	9	21	집산도로	162	중로 1-8	대로 3-7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18	21		332						
	중로	1	10	21	집산도로	332	대로 3-7	중로 1-1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19	21		1,377						
	중로	1	11	21	집산도로	1,377	대로 2-2	대로 3-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20	21		325						
	중로	1	12	21	집산도로	325	중로 1-11	중로 1-1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21	21		719						
	중로	1	13	21	집산도로	719	대로 2-2	중로 1-14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22	21		699						
	중로	1	14	21	집산도로	699	대로 2-3	중로 1-1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23	21		232						
	중로	1	15	21	집산도로	232	대로 2-3	중로 1-1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27	21		2,431						
	중로	1	12	21	집산도로	2,431	대로 2-3	대로 3-9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1	28	21		566						
	중로	1	13	21	집산도로	566	대로 2-3	중로 1-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1	29	21		320						
	중로	1	14	21	집산도로	320	대로 2-3	중로 1-16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1	30	21		324						
	중로	1	15	21	집산도로	324	대로 2-3	중로 1-16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1	31	21		625						
	중로	1	16	21	집산도로	625	중로 1-12	중로 1-1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1	32	21		331						
	중로	1	17	21	집산도로	331	대로 2-3	중로 1-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1	33	21		555						
	중로	1	18	21	집산도로	555	대로 2-3	중로 1-5	일반도로			(안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34	21		304						
	중로	1	16	21	집산도로	304	대로 3-7	중로 1-1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35	21		396						
	중로	1	19	21	집산도로	396	대로 3-4	중로 1-8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1	36	21		414						
	중로	1	17	21	국지도로	414	대로 3-7	중로 1-9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37	21		100						
	중로	1	18	21	국지도로	100	대로 3-7	중로 1-17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1	38	21		524						
	중로	1	19	21	집산도로	524	대로 2-2	중로 2-15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2	22	16		477						
	중로	2	15	16	집산도로	477	대로 2-2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84-9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2	23	16		272						
	중로	2	12	16	집산도로	272	대로 2-3	중로 2-1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24	16		536						
	중로	2	16	16	국지도로	536	중로 1-14	중로 1-1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2	25	16		361						
	중로	2	13	16	집산도로	361	중로 1-18	근린공원 5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26	16		310						
	중로	2	14	16	집산도로	310	대로 2-2	중로 1-18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27	16		114						
	중로	2	15	16	국지도로	114	광로 2-1	중로 1-19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28	16		152						
	중로	2	16	16	국지도로	152	중로 2-18	중로 2-19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29	16		152						
	중로	2	17	16	국지도로	152	중로 2-18	중로 2-19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30	16		222						
	중로	2	18	16	국지도로	222	중로 1-14	중로 1-15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31	16		222						
	중로	2	19	16	국지도로	222	중로 1-14	중로 1-15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33	16		314						
	중로	2	20	16	집산도로	314	대로 2-3	중로 1-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34	16		15						
	중로	2	21	16	국지도로	15	중로 1-12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388-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2	35	16		242						
	중로	2	22	16	집산도로	242	대로 2-3	중로 1-18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13	12		237						
	중로	3	6	12	국지도로	237	대로 3-6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중로	3	14	13		15						
	중로	3	8	13	국지도로	15	중로 1-18	소로 1-54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15	13		206						
	중로	3	9	13	국지도로	206	중로 1-18	중로 2-12	일반도로			(안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6	12		20						
	중로	3	10	12	국지도로	20	중로 2-22	소로 1-5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17	12		136						
	중로	3	11	12	국지도로	136	중로 2-22	중로 2-14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18	12		170						
	중로	3	12	12	국지도로	170	중로 1-5	중로 2-14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19	13		415						
	중로	3	13	13	국지도로	415	대로 2-3	중로 2-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20	13		195						
	중로	3	14	13	국지도로	195	대로 3-7	대로 3-7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21	13		177						
	중로	3	15	13	국지도로	177	중로 1-18	중로 2-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22	13		194						
	중로	3	16	13	국지도로	194	대로 3-8	주차장 24	일반도로			(안동)
신설	중로	3	23	13		24						
	중로	3	17	13	국지도로	24	전기공급설비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71-4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61	10		105						
	소로	1	34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62	10		105						
	소로	1	35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63	10		105						
	소로	1	36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64	10		105						
	소로	1	37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65	10		106						
	소로	1	38	10	국지도로	106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66	10		103						
	소로	1	39	10	국지도로	103	소로 1-81	소로 1-3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67	10		88						
	소로	1	40	10	국지도로	88	소로 1-81	소로 1-3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68	10		805						
	소로	1	41	10	국지도로	805	소로 1-42	소로 2-7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69	10		799						
	소로	1	42	10	국지도로	799	소로 1-41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70	10		20						
	소로	1	43	10	특수도로	20	대로 3-6	소로 1-41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71	10		18						
	소로	1	44	10	국지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72	10		8						
	소로	1	45	10	국지도로	8	공공공지 9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73	10		18						
	소로	1	46	10	국지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74	10		18						
	소로	1	47	10	국지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75	10		18						
	소로	1	48	10	국지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76	10		20						
	소로	1	49	10	국지도로	20	대로 3-6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77	10		179						
	소로	1	52	10	국지도로	179	소로 2-17	소로 2-16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78	10		119						
	소로	1	53	10	국지도로	119	소로 1-54	소로 1-54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79	10		270						
	소로	1	54	10	국지도로	270	소로 1-52	소로 1-5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80	10		128						
	소로	1	55	10	국지도로	128	중로 2-12	소로 1-6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81	10		128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28	중로 2-12	소로 1-6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82	10		128						
	소로	1	57	10	국지도로	128	중로 2-12	소로 1-6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83	10		128						
	소로	1	58	10	국지도로	128	중로 2-12	소로 1-6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84	10		105						
	소로	1	50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85	10		105						
	소로	1	51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86	10		105						
	소로	1	52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87	10		105						
	소로	1	53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88	10		105						
	소로	1	54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89	10		105						
	소로	1	55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0	10		164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64	중로 1-11	중로 2-1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1	10		202						
	소로	1	57	10	국지도로	202	중로 2-16	소로 1-5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2	10		38						
	소로	1	58	10	국지도로	38	소로 1-57	소로 1-6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3	10		38						
	소로	1	59	10	국지도로	38	소로 1-61	소로 1-6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4	10		38						
	소로	1	60	10	국지도로	38	소로 1-62	중로 2-16	일반도로			(예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95	10		206						
	소로	1	61	10	국지도로	206	중로 2-16	소로 1-5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6	10		210						
	소로	1	62	10	국지도로	210	중로 2-16	소로 1-5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7	10		84						
	소로	1	63	10	국지도로	84	중로 2-16	소로 1-6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8	10		85						
	소로	1	64	10	국지도로	85	중로 2-16	소로 1-6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99	10		62						
	소로	1	65	10	국지도로	62	중로 2-16	소로 1-6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0	10		229						
	소로	1	66	10	국지도로	229	중로 2-16	중로 1-1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1	10		59						
	소로	1	67	10	국지도로	59	중로 2-16	근린공원 5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2	10		395						
	소로	1	68	10	국지도로	395	중로 2-16	중로 1-14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3	10		178						
	소로	1	69	10	국지도로	178	중로 2-16	소로 1-6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4	10		101						
	소로	1	70	10	국지도로	101	소로 1-74	소로 1-69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5	10		102						
	소로	1	71	10	국지도로	102	소로 1-74	소로 1-69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6	10		103						
	소로	1	72	10	국지도로	103	소로 1-74	소로 1-6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7	10		105						
	소로	1	73	10	국지도로	105	소로 1-74	소로 1-6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8	10		137						
	소로	1	74	10	국지도로	137	중로 2-16	소로 1-6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09	10		70						
	소로	1	75	10	국지도로	70	소로 1-71	소로 1-6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10	10		56						
	소로	1	76	10	국지도로	56	소로 1-71	소로 1-6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11	10		188						
	소로	1	59	10	국지도로	188	대로 2-1	중로 3-17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12	10		108						
	소로	1	60	10	국지도로	108	중로 3-13	소로 2-9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13	10		256						
	소로	1	61	10	국지도로	256	중로 3-13	중로 3-1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14	10		157						
	소로	1	62	10	국지도로	157	중로 3-13	소로 1-6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15	10		131						
	소로	1	63	10	국지도로	131	중로 3-13	중로 2-13	일반도로			(안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16	10		145						
	소로	1	64	10	국지도로	145	중로 2-12	소로 1-68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17	10		146						
	소로	1	65	10	국지도로	146	중로 2-12	소로 1-68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18	10		166						
	소로	1	66	10	국지도로	166	중로 2-12	소로 1-67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19	10		72						
	소로	1	67	10	국지도로	72	중로 3-9	중로 3-15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20	10		120						
	소로	1	68	10	국지도로	120	중로 2-13	중로 3-15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21	10		50						
	소로	1	77	10	국지도로	50	소로 1-79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22	10		69						
	소로	1	78	10	국지도로	69	소로 1-79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23	10		102						
	소로	1	79	10	국지도로	102	소로 1-81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24	10		91						
	소로	1	80	10	국지도로	91	소로 1-81	소로 1-41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25	10		127						
	소로	1	81	10	국지도로	127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26	10		114						
	소로	1	69	10	국지도로	114	중로 1-18	중로 3-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27	10		139						
	소로	1	70	10	국지도로	139	소로 1-69	중로 3-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28	10		170						
	소로	1	71	10	국지도로	170	중로 1-5	중로 2-14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29	10		155						
	소로	1	72	10	국지도로	155	중로 3-12	소로 1-7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0	10		155						
	소로	1	73	10	국지도로	155	중로 3-12	소로 1-7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1	10		154						
	소로	1	74	10	국지도로	154	중로 3-12	소로 1-7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2	10		90						
	소로	1	75	10	국지도로	90	중로 2-14	소로 1-69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3	10		89						
	소로	1	76	10	국지도로	89	중로 3-12	소로 1-75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4	10		188						
	소로	1	77	10	국지도로	188	중로 2-14	중로 3-1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5	10		89						
	소로	1	78	10	국지도로	89	중로 3-11	소로 1-77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6	10		20						
	소로	1	82	10	국지도로	20	중로 1-9	소로 1-42	일반도로			(예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37	10		115						
	소로	1	79	10	특수도로	115	중로 1-12	근린공원 7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8	10		185						
	소로	1	80	10	국지도로	185	대로 3-2	중로 1-8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39	10		117						
	소로	1	81	10	국지도로	117	소로 1-80	소로 1-80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59	10		201						
	소로	1	82	10	특수도로	201	근린공원 8	근린공원 9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60	10		132						
	소로	1	83	10	특수도로	132	중로 1-12	근린공원 9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61	10		291						
	소로	1	84	10	특수도로	291	중로 1-17	중로 2-20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62	10		253						
	소로	1	85	10	특수도로	253	대로 3-9	어린이공원 7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63	10		250						
	소로	1	83	10	특수도로	250	중로 1-19	수변공원 2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64	10		496						
	소로	1	84	10	특수도로	496	소로 1-83	대로 2-2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65	10		18						
	소로	1	85	10	특수도로	18	소로 1-42	수변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66	10		38						
	소로	1	86	10	특수도로	38	어린이공원 4	소로 1-42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67	10		37						
	소로	1	87	10	특수도로	37	소로 1-41	어린이공원 4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68	10		18						
	소로	1	88	10	특수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69	10		240						
	소로	1	89	10	특수도로	240	어린이공원 6	대로 3-7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70	10		294						
	소로	1	90	10	특수도로	294	중로 1-11	대로 3-7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71	10		405						
	소로	1	91	10	특수도로	405	중로 1-14	중로 1-12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72	10		38						
	소로	1	86	10	특수도로	38	대로 2-3	근린공원 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73	10		131						
	소로	1	87	10	특수도로	131	어린이공원 4	근린공원 4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74	10		50						
	소로	1	88	10	특수도로	50	중로 2-18	대로 2-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75	10		103						
	소로	1	89	10	특수도로	103	광장 1	중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76	10		90						
	소로	1	90	10	특수도로	90	중로 1-16	중로 2-19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77	10		237						
	소로	1	91	10	특수도로	237	중로 1-12	중로 1-16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78	10		20						
	소로	1	92	10	국지도로	20	대로 3-6	소로 1-9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79	10		360						
	소로	1	93	10	국지도로	360	소로 1-102	대로 3-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0	10		245						
	소로	1	94	10	국지도로	245	소로 1-99	소로 1-9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1	10		137						
	소로	1	95	10	국지도로	137	소로 1-104	소로 1-9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2	10		137						
	소로	1	96	10	국지도로	137	소로 1-104	소로 1-9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3	10		137						
	소로	1	97	10	국지도로	137	소로 1-104	소로 1-9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4	10		98						
	소로	1	98	10	국지도로	98	소로 1-99	소로 1-104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5	10		243						
	소로	1	99	10	국지도로	243	소로 1-104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6	10		137						
	소로	1	100	10	국지도로	137	소로 1-99	소로 1-99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7	10		20						
	소로	1	101	10	국지도로	20	대로 3-6	소로 1-9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8	10		129						
	소로	1	102	10	국지도로	129	소로 2-24	소로 1-103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89	10		191						
	소로	1	103	10	국지도로	191	소로 1-93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90	10		182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182	소로 1-103	소로 1-94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91	10		93						
	소로	1	105	10	국지도로	93	소로 1-104	소로 1-99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1	192	10		147						
	소로	1	106	10	특수도로	147	대로 3-7	근린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시점은 안동 대로 3-7
신설	소로	1	193	10		162						
	소로	1	92	10	특수도로	162	수변공원 2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94	10		50						
	소로	1	93	10	특수도로	50	중로 1-5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1	195	10		264						
	소로	1	94	10	특수도로	264	대로 3-7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12	8		8						
	소로	2	5	8	국지도로	8	소로 1-41	공공공지 8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13	8		8						
	소로	2	6	8	국지도로	8	소로 1-42	공공공지 5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14	8		8						
	소로	2	7	8	국지도로	8	소로 1-41	공공공지 6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15	8		8						
	소로	2	8	8	국지도로	8	소로 1-41	공공공지 7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16	8		9						
	소로	2	9	8	국지도로	9	소로 1-60	공공공지 10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17	8		151						
	소로	2	10	8	국지도로	151	소로 1-60	중로 3-1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18	8		64						
	소로	2	11	8	국지도로	64	소로 1-60	소로 2-10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19	8		115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5	중로 3-13	소로 1-6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20	8		85						
	소로	2	13	8	국지도로	85	소로 2-12	중로 2-1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21	8		10						
	소로	2	14	8	국지도로	10	소로 1-70	공공공지 1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22	8		8						
	소로	2	15	8	국지도로	8	소로 1-77	공공공지 1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23	8		8						
	소로	2	16	8	국지도로	8	소로 1-52	공공공지 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24	8		8						
	소로	2	17	8	국지도로	8	소로 1-52	공공공지 14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25	8		52						
	소로	2	18	8	국지도로	52	중로 2-22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26	8		54						
	소로	2	19	8	국지도로	54	중로 2-14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27	8		18						
	소로	2	9	8	특수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29	8		18						
	소로	2	10	8	특수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0	8		18						
	소로	2	11	8	특수도로	18	소로 1-42	수변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1	8		18						
	소로	2	12	8	특수도로	18	소로 1-42	수변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2	8		18						
	소로	2	13	8	특수도로	18	소로 1-42	수변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3	8		20						
	소로	2	14	8	특수도로	20	중로 1-14	소로 1-69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4	8		28						
	소로	2	15	8	특수도로	28	소로 1-51	소로 1-50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5	8		28						
	소로	2	16	8	특수도로	28	소로 1-52	소로 1-51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6	8		28						
	소로	2	17	8	특수도로	28	소로 1-53	소로 1-52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7	8		28						
	소로	2	18	8	특수도로	28	소로 1-54	소로 1-53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8	8		28						
	소로	2	19	8	특수도로	28	소로 1-55	소로 1-54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39	8		28						
	소로	2	20	8	특수도로	28	소로 1-35	소로 1-34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40	8		28						
	소로	2	21	8	특수도로	28	소로 1-36	소로 1-35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41	8		28						
	소로	2	22	8	특수도로	28	소로 1-37	소로 1-36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42	8		28						
	소로	2	23	8	특수도로	28	소로 1-38	소로 1-37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43	8		31						
	소로	2	20	8	특수도로	31	중로 3-9	소로 1-66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44	8		40						
	소로	2	21	8	특수도로	40	소로 1-66	중로 3-15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45	8		37						
	소로	2	22	8	특수도로	37	소로 1-65	소로 1-64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46	8		37						
	소로	2	23	8	특수도로	37	소로 1-64	중로 2-1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2	47	8		10						
	소로	2	24	8	국지도로	10	소로 1-102	공공공지 10	일반도로			(예천)
신설	소로	2	48	4~8		863						
	소로	2	24	4~8	국지도로	863	소로 3-2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438-7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9	4		36						
	소로	3	27	4	국지도로	36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13-6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40	일반도로			(안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0	4		31						
	소로	3	28	4	국지도로	31	중로 2-2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49-3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11	4		132						
	소로	3	29	4	국지도로	132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76-2	경관녹지 1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12	4		7						
	소로	3	30	4	국지도로	7	소로 3-29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89-1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41	6		30						
	소로	3	31	6	특수도로	30	대로 2-3	소로 1-58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42	6		39						
	소로	3	32	6	특수도로	39	소로 1-58	소로 1-57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43	6		40						
	소로	3	33	6	특수도로	40	소로 1-57	중로 3-1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44	6		37						
	소로	3	34	6	특수도로	37	소로 1-56	소로 1-55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45	6		37						
	소로	3	35	6	특수도로	37	소로 1-55	중로 2-1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46	6		20						
	소로	3	12	6	특수도로	20	중로 2-16	어린이공원 8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3	47	6		20						
	소로	3	13	6	특수도로	20	소로 1-68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3	48	6		20						
	소로	3	14	6	특수도로	20	중로 1-11	소로 1-57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3	49	6		20						
	소로	3	15	6	특수도로	20	소로 1-66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3	50	6		15						
	소로	3	36	6	특수도로	15	소로 2-10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51	6		40						
	소로	3	37	6	특수도로	40	소로 1-62	중로 3-1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52	6		39						
	소로	3	38	6	특수도로	39	소로 1-61	소로 1-62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53	6		30						
	소로	3	39	6	특수도로	30	대로 2-3	소로 1-61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54	6		15						
	소로	3	40	6	특수도로	15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89	소로 1-5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55	6		40						
	소로	3	41	6	특수도로	40	소로 1-53	소로 1-52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56	6		25						
	소로	3	42	6	특수도로	25	대로 2-3	소로 1-54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57	6		20						
	소로	3	43	6	특수도로	20	소로 1-52	중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58	6		20						
	소로	3	44	6	특수도로	20	중로 2-22	근린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59	6		20						
	소로	3	45	6	특수도로	20	소로 1-52	중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60	6		20						
	소로	3	46	6	특수도로	20	중로 2-22	소로 1-77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61	6		40						
	소로	3	47	6	특수도로	40	중로 2-14	소로 1-74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62	6		40						
	소로	3	48	6	특수도로	40	소로 1-74	소로 1-7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63	6		40						
	소로	3	49	6	특수도로	40	소로 1-73	소로 1-72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64	6		20						
	소로	3	50	6	특수도로	20	소로 1-72	중로 1-5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65	6		25						
	소로	3	51	6	특수도로	25	대로 2-2	소로 1-71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69	6		38						
	소로	3	16	6	특수도로	38	소로 1-95	소로 1-94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3	70	6		38						
	소로	3	17	6	특수도로	38	소로 1-96	소로 1-95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3	71	6		38						
	소로	3	18	6	특수도로	38	소로 1-103	소로 1-97	보행자 전용도로			(예천)
신설	소로	3	72	6		27						
	소로	3	52	6	특수도로	27	대로 3-7	중로 3-14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73	6		57						
	소로	3	53	6	특수도로	57	중로 3-14	근린공원 4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74	4		54						
	소로	3	54	4	국지도로	54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337-9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96-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75	4		235						
	소로	3	55	4	국지도로	235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6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8-2	일반도로			(안동)
신설	소로	3	76	4		6						
	소로	3	56	4	국지도로	6	소로 3-55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5	일반도로			(안동)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77	6	특수도로	7	대로 3-6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3-4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소로	3	57	6								
신설	소로	3	78	6	특수도로	7	대로 3-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3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소로	3	58	6								
신설	소로	3	79	6	특수도로	7	대로 3-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2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소로	3	59	6								
신설	소로	3	80	6	특수도로	10	대로 3-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1-1	보행자 전용도로			(안동)
	소로	3	60	6								

○ 안동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2,770	대로 2-2	대로 2-1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6	28	보조간선도로	437	대로 3-6	대로 2-3	일반도로			시점은 예천 대로 3-6
신설	대로	3	7	28	보조간선도로	836	대로 3-3	대로 2-3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8	25	집산도로	692	대로 3-4	대로 3-2	일반도로			
신설	대로	3	9	25	집산도로	260	대로 2-3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20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1	21	집산도로	288	중로 1-6	대로 3-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2	21	집산도로	2,431	대로 2-3	대로 3-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3	21	집산도로	566	대로 2-3	중로 1-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4	21	집산도로	320	대로 2-3	중로 1-16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5	21	집산도로	324	대로 2-3	중로 1-16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6	21	집산도로	625	중로 1-12	중로 1-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7	21	집산도로	331	대로 2-3	중로 1-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8	21	집산도로	555	대로 2-3	중로 1-5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9	21	집산도로	396	대로 3-4	중로 1-8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2	16	집산도로	272	대로 2-3	중로 2-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3	16	집산도로	361	중로 1-18	근린공원 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4	16	집산도로	310	대로 2-2	중로 1-18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5	16	국지도로	114	광로 2-1	중로 1-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6	16	국지도로	152	중로 2-18	중로 2-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7	16	국지도로	152	중로 2-18	중로 2-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8	16	국지도로	222	중로 1-14	중로 1-15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2	19	16	국지도로	222	중로 1-14	중로 1-1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0	16	집산도로	314	대로 2-3	중로 1-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1	16	국지도로	15	중로 1-12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338-3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2	16	집산도로	242	대로 2-3	중로 1-18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8	13	국지도로	15	중로 1-18	소로 1-5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9	13	국지도로	206	중로 1-18	중로 2-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0	12	국지도로	20	중로 2-22	소로 1-5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1	12	국지도로	136	중로 2-22	중로 2-1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2	12	국지도로	170	중로 1-5	중로 2-1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3	13	국지도로	415	대로 2-3	중로 2-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4	13	국지도로	195	대로 3-7	대로 3-7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5	13	국지도로	177	중로 1-18	중로 2-12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6	13	국지도로	194	대로 3-8	주차장 24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7	13	국지도로	24	전기공급설비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71-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2	10	국지도로	179	소로 2-17	소로 2-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3	10	국지도로	119	소로 1-54	소로 1-5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4	10	국지도로	270	소로 1-52	소로 1-5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5	10	국지도로	128	중로 2-12	소로 1-6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28	중로 2-12	소로 1-6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7	10	국지도로	128	중로 2-12	소로 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8	10	국지도로	128	중로 2-12	소로 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9	10	국지도로	188	대로 2-1	중로 3-1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0	10	국지도로	108	중로 3-13	소로 2-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1	10	국지도로	256	중로 3-13	중로 3-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2	10	국지도로	157	중로 3-13	소로 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3	10	국지도로	131	중로 3-13	중로 2-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4	10	국지도로	145	중로 2-12	소로 1-6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5	10	국지도로	146	중로 2-12	소로 1-6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	10	국지도로	166	중로 2-12	소로 1-6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7	10	국지도로	72	중로 3-9	중로 3-1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8	10	국지도로	120	중로 2-13	중로 3-15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69	10	국지도로	114	중로 1-18	중로 3-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0	10	국지도로	139	소로 1-69	중로 3-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1	10	국지도로	170	중로 1-5	중로 2-1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2	10	국지도로	155	중로 3-12	소로 1-7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3	10	국지도로	155	중로 3-12	소로 1-7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4	10	국지도로	154	중로 3-12	소로 1-7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5	10	국지도로	90	중로 2-14	소로 1-6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6	10	국지도로	89	중로 3-12	소로 1-7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7	10	국지도로	188	중로 2-14	중로 3-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8	10	국지도로	89	중로 3-11	소로 1-7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9	10	특수도로	115	중로 1-12	근린공원 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0	10	국지도로	185	대로 3-2	중로 1-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81	10	국지도로	117	소로 1-80	소로 1-80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82	10	특수도로	201	근린공원 8	근린공원 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3	10	특수도로	132	중로 1-12	근린공원 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4	10	특수도로	291	중로 1-17	중로 2-20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5	10	특수도로	253	대로 3-9	어린이공원 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6	10	특수도로	38	대로 2-3	근린공원 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7	10	특수도로	131	어린이공원 4	근린공원 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8	10	특수도로	50	중로 2-18	대로 2-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9	10	특수도로	103	광장 1	중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90	10	특수도로	90	중로 1-16	중로 2-1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91	10	특수도로	237	중로 1-12	중로 1-1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92	10	특수도로	162	수변공원 2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93	10	특수도로	50	중로 1-5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94	10	특수도로	264	대로 3-7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9	8	국지도로	9	소로 1-60	공공공지 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0	8	국지도로	151	소로 1-60	중로 3-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1	8	국지도로	64	소로 1-60	소로 2-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5	중로 3-13	소로 1-6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3	8	국지도로	85	소로 2-12	중로 2-13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4	8	국지도로	10	소로 1-70	공공공지 13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5	8	국지도로	8	소로 1-77	공공공지 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8	소로 1-52	공공공지 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7	8	국지도로	8	소로 1-52	공공공지 14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8	8	국지도로	52	중로 2-22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19	8	국지도로	54	중로 2-14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20	8	특수도로	31	중로 3-9	소로 1-6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1	8	특수도로	40	소로 1-66	중로 3-1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2	8	특수도로	37	소로 1-65	소로 1-6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3	8	특수도로	37	소로 1-64	중로 2-1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4	4~8	국지도로	863	소로 3-2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438-7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7	4	국지도로	36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13-6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40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8	4	국지도로	31	중로 2-2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49-3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29	4	국지도로	132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76-2	경관녹지 1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0	4	국지도로	7	소로 3-29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89-1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31	6	특수도로	30	대로 2-3	소로 1-58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2	6	특수도로	39	소로 1-58	소로 1-5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3	6	특수도로	40	소로 1-57	중로 3-1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4	6	특수도로	37	소로 1-56	소로 1-5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5	6	특수도로	37	소로 1-55	중로 2-1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6	6	특수도로	15	소로 2-10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7	6	특수도로	40	소로 1-62	중로 3-1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8	6	특수도로	39	소로 1-61	소로 1-6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39	6	특수도로	30	대로 2-3	소로 1-6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0	6	특수도로	15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89	소로 1-5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1	6	특수도로	40	소로 1-53	소로 1-5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2	6	특수도로	25	대로 2-3	소로 1-5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3	6	특수도로	20	소로 1-52	중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4	6	특수도로	20	중로 2-22	근린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45	6	특수도로	20	소로 1-52	중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6	6	특수도로	20	중로 2-22	소로 1-7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7	6	특수도로	40	중로 2-14	소로 1-7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8	6	특수도로	40	소로 1-74	소로 1-7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49	6	특수도로	40	소로 1-73	소로 1-7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0	6	특수도로	20	소로 1-72	중로 1-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1	6	특수도로	25	대로 2-2	소로 1-7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2	6	특수도로	27	대로 3-7	중로 3-1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3	6	특수도로	57	중로 3-14	근린공원 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4	4	국지도로	54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337-9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96-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55	4	국지도로	235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6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8-2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56	4	국지도로	6	소로 3-55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5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57	6	특수도로	7	대로 3-6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3-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8	6	특수도로	7	대로 3-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59	6	특수도로	7	대로 3-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60	6	특수도로	10	대로 3-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1-1	보행자 전용도로			

○ 안동시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 2-3	·도로신설(B=30m, L=2,770m)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대로 3-6	·도로신설(B=28m, L=437m)	"
-	대로 3-7	·도로신설(B=28m, L=836m)	"
-	대로 3-8	·도로신설(B=25m, L=692m)	"
-	대로 3-9	·도로신설(B=25m, L=260m)	"
-	중로 1-11	·도로신설(B=21m, L=288m)	"
-	중로 1-12	·도로신설(B=21m, L=2,431m)	"
-	중로 1-13	·도로신설(B=21m, L=566m)	"
-	중로 1-14	·도로신설(B=21m, L=320m)	"
-	중로 1-15	·도로신설(B=21m, L=324m)	"
-	중로 1-16	·도로신설(B=21m, L=625m)	"
-	중로 1-17	·도로신설(B=21m, L=331m)	"
-	중로 1-18	·도로신설(B=21m, L=556m)	"
-	중로 1-19	·도로신설(B=21m, L=396m)	"
-	중로 2-12	·도로신설(B=16m, L=272m)	"
-	중로 2-13	·도로신설(B=16m, L=361m)	"
-	중로 2-14	·도로신설(B=16m, L=310m)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2-15	·도로신설(B=16m, L=114m)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중로 2-16	·도로신설(B=16m, L=152m)	"
-	중로 2-17	·도로신설(B=16m, L=152m)	"
-	중로 2-18	·도로신설(B=16m, L=222m)	"
-	중로 2-19	·도로신설(B=16m, L=222m)	"
-	중로 2-20	·도로신설(B=16m, L=314m)	"
-	중로 2-21	·도로신설(B=16m, L=15m)	"
-	중로 2-22	·도로신설(B=16m, L=242m)	"
-	중로 3-8	·도로신설(B=13m, L=15m)	"
-	중로 3-9	·도로신설(B=13m, L=206m)	"
-	중로 3-10	·도로신설(B=12m, L=20m)	"
-	중로 3-11	·도로신설(B=12m, L=136m)	"
-	중로 3-12	·도로신설(B=12m, L=170m)	"
-	중로 3-13	·도로신설(B=13m, L=415m)	"
-	중로 3-14	·도로신설(B=13m, L=195m)	"
-	중로 3-15	·도로신설(B=13m, L=177m)	"
-	중로 3-16	·도로신설(B=13m, L=194m)	"
-	중로 3-17	·도로신설(B=13m, L=24m)	"
-	소로 1-52	·도로신설(B=10m, L=179m)	"
-	소로 1-53	·도로신설(B=10m, L=119m)	"
-	소로 1-54	·도로신설(B=10m, L=270m)	"
-	소로 1-55	·도로신설(B=10m, L=128m)	"
-	소로 1-56	·도로신설(B=10m, L=128m)	"
-	소로 1-57	·도로신설(B=10m, L=128m)	"
-	소로 1-58	·도로신설(B=10m, L=128m)	"
-	소로 1-59	·도로신설(B=10m, L=188m)	"
-	소로 1-60	·도로신설(B=10m, L=108m)	"
-	소로 1-61	·도로신설(B=10m, L=256m)	"
-	소로 1-62	·도로신설(B=10m, L=157m)	"
-	소로 1-63	·도로신설(B=10m, L=131m)	"
-	소로 1-64	·도로신설(B=10m, L=145m)	"
-	소로 1-65	·도로신설(B=10m, L=146m)	"
-	소로 1-66	·도로신설(B=10m, L=166m)	"
-	소로 1-67	·도로신설(B=10m, L=72m)	"
-	소로 1-68	·도로신설(B=10m, L=120m)	"
-	소로 1-69	·도로신설(B=10m, L=114m)	"
-	소로 1-70	·도로신설(B=10m, L=139m)	"
-	소로 1-71	·도로신설(B=10m, L=170m)	"
-	소로 1-72	·도로신설(B=10m, L=155m)	"
-	소로 1-73	·도로신설(B=10m, L=155m)	"
-	소로 1-74	·도로신설(B=10m, L=154m)	"
-	소로 1-75	·도로신설(B=10m, L=90m)	"
-	소로 1-76	·도로신설(B=10m, L=89m)	"
-	소로 1-77	·도로신설(B=10m, L=188m)	"
-	소로 1-78	·도로신설(B=10m, L=89m)	"
-	소로 1-79	·도로신설(B=10m, L=115m)	"
-	소로 1-80	·도로신설(B=10m, L=185m)	"
-	소로 1-81	·도로신설(B=10m, L=117m)	"
-	소로 1-82	·도로신설(B=10m, L=201m)	"
-	소로 1-83	·도로신설(B=10m, L=132m)	"
-	소로 1-84	·도로신설(B=10m, L=291m)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85	·도로신설(B=10m, L=253m)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 1-86	·도로신설(B=10m, L=38m)	"
-	소로 1-87	·도로신설(B=10m, L=131m)	"
-	소로 1-88	·도로신설(B=10m, L=50m)	"
-	소로 1-89	·도로신설(B=10m, L=103m)	"
-	소로 1-90	·도로신설(B=10m, L=90m)	"
-	소로 1-91	·도로신설(B=10m, L=237m)	"
-	소로 1-92	·도로신설(B=10m, L=162m)	"
-	소로 1-93	·도로신설(B=10m, L=50m)	"
-	소로 1-94	·도로신설(B=10m, L=264m)	"
-	소로 2-9	·도로신설(B=8m, L=9m)	"
-	소로 2-10	·도로신설(B=8m, L=151m)	"
-	소로 2-11	·도로신설(B=8m, L=64m)	"
-	소로 2-12	·도로신설(B=8m, L=115m)	"
-	소로 2-13	·도로신설(B=8m, L=85m)	"
-	소로 2-14	·도로신설(B=8m, L=10m)	"
-	소로 2-15	·도로신설(B=8m, L=8m)	"
-	소로 2-16	·도로신설(B=8m, L=8m)	"
-	소로 2-17	·도로신설(B=8m, L=8m)	"
-	소로 2-18	·도로신설(B=8m, L=52m)	"
-	소로 2-19	·도로신설(B=8m, L=54m)	"
-	소로 2-20	·도로신설(B=8m, L=31m)	"
-	소로 2-21	·도로신설(B=8m, L=40m)	"
-	소로 2-22	·도로신설(B=8m, L=37m)	"
-	소로 2-23	·도로신설(B=8m, L=37m)	"
-	소로 2-24	·도로신설(B=4.8m, L=863m)	"
-	소로 3-27	·도로신설(B=4m, L=36m)	"
-	소로 3-28	·도로신설(B=4m, L=31m)	"
-	소로 3-29	·도로신설(B=4m, L=132m)	"
-	소로 3-30	·도로신설(B=4m, L=7m)	"
-	소로 3-31	·도로신설(B=6m, L=30m)	"
-	소로 3-32	·도로신설(B=6m, L=39m)	"
-	소로 3-33	·도로신설(B=6m, L=40m)	"
-	소로 3-34	·도로신설(B=6m, L=37m)	"
-	소로 3-35	·도로신설(B=6m, L=37m)	"
-	소로 3-36	·도로신설(B=6m, L=15m)	"
-	소로 3-37	·도로신설(B=6m, L=40m)	"
-	소로 3-38	·도로신설(B=6m, L=39m)	"
-	소로 3-39	·도로신설(B=6m, L=30m)	"
-	소로 3-40	·도로신설(B=6m, L=15m)	"
-	소로 3-41	·도로신설(B=6m, L=40m)	"
-	소로 3-42	·도로신설(B=6m, L=25m)	"
-	소로 3-43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44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45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46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47	·도로신설(B=6m, L=40m)	"
-	소로 3-48	·도로신설(B=6m, L=40m)	"
-	소로 3-49	·도로신설(B=6m, L=40m)	"
-	소로 3-50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51	·도로신설(B=6m, L=25m)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52	·도로신설(B=6m, L=27m)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 3-53	·도로신설(B=6m, L=57m)	"
-	소로 3-54	·도로신설(B=4m, L=54m)	"
-	소로 3-55	·도로신설(B=4m, L=235m)	"
-	소로 3-56	·도로신설(B=4m, L=6m)	"
-	소로 3-57	·도로신설(B=6m, L=7m)	"
-	소로 3-58	·도로신설(B=6m, L=7m)	"
-	소로 3-59	·도로신설(B=6m, L=7m)	"
-	소로 3-60	·도로신설(B=6m, L=10m)	"

○ 예천군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6	28	보조간선도로	655	대로 3-4	대로 3-6	일반도로			종점은 안동 대로 3-6
신설	대로	3	7	28	집산도로	1,258	대로 3-6	대로 2-2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9	21	집산도로	162	중로 1-8	대로 3-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0	21	집산도로	332	대로 3-7	중로 1-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1	21	집산도로	1,377	대로 2-2	대로 3-6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2	21	집산도로	325	중로 1-11	중로 1-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3	21	집산도로	719	대로 2-2	중로 1-14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4	21	집산도로	699	대로 2-3	중로 1-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5	21	집산도로	232	대로 2-3	중로 1-13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6	21	집산도로	304	대로 3-7	중로 1-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7	21	국지도로	414	대로 3-7	중로 1-9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8	21	국지도로	100	대로 3-7	중로 1-17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9	21	집산도로	524	대로 2-2	중로 2-15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5	16	집산도로	477	대로 2-2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84-9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6	16	국지도로	536	중로 1-14	중로 1-11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6	12	국지도로	237	대로 3-6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4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5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6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7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8	10	국지도로	106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39	10	국지도로	103	소로 1-81	소로 1-3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0	10	국지도로	88	소로 1-81	소로 1-3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1	10	국지도로	805	소로 1-42	소로 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2	10	국지도로	799	소로 1-41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3	10	특수도로	20	대로 3-6	소로 1-4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44	10	국지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5	10	국지도로	8	공공공지 9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6	10	국지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7	10	국지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8	10	국지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49	10	국지도로	20	대로 3-6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0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51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2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3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4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5	10	국지도로	105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6	10	국지도로	164	중로 1-11	중로 2-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7	10	국지도로	202	중로 2-16	소로 1-5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8	10	국지도로	38	소로 1-57	소로 1-6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59	10	국지도로	38	소로 1-61	소로 1-6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0	10	국지도로	38	소로 1-62	중로 2-1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1	10	국지도로	206	중로 2-16	소로 1-5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2	10	국지도로	210	중로 2-16	소로 1-5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3	10	국지도로	84	중로 2-16	소로 1-6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4	10	국지도로	85	중로 2-16	소로 1-6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5	10	국지도로	62	중로 2-16	소로 1-6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6	10	국지도로	229	중로 2-16	중로 1-1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7	10	국지도로	59	중로 2-16	근린공원 5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8	10	국지도로	395	중로 2-16	중로 1-1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69	10	국지도로	178	중로 2-16	소로 1-6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0	10	국지도로	101	소로 1-74	소로 1-6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1	10	국지도로	102	소로 1-74	소로 1-6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2	10	국지도로	103	소로 1-74	소로 1-6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3	10	국지도로	105	소로 1-74	소로 1-6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4	10	국지도로	137	중로 2-16	소로 1-6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5	10	국지도로	70	소로 1-71	소로 1-6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6	10	국지도로	56	소로 1-71	소로 1-68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7	10	국지도로	50	소로 1-79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8	10	국지도로	69	소로 1-79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79	10	국지도로	102	소로 1-81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80	10	국지도로	91	소로 1-81	소로 1-41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81	10	국지도로	127	소로 1-41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82	10	국지도로	20	중로 1-9	소로 1-42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83	10	특수도로	250	중로 1-19	수변공원 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4	10	특수도로	496	소로 1-83	대로 2-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5	10	특수도로	18	소로 1-42	수변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6	10	특수도로	38	어린이공원 4	소로 1-4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7	10	특수도로	37	소로 1-41	어린이공원 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8	10	특수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89	10	특수도로	240	어린이공원 6	대로 3-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90	10	특수도로	294	중로 1-11	대로 3-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91	10	특수도로	405	중로 1-14	중로 1-1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1	92	10	국지도로	20	대로 3-6	소로 1-9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3	10	국지도로	360	소로 1-102	대로 3-6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94	10	국지도로	245	소로 1-99	소로 1-9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5	10	국지도로	137	소로 1-104	소로 1-9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6	10	국지도로	137	소로 1-104	소로 1-9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7	10	국지도로	137	소로 1-104	소로 1-9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8	10	국지도로	98	소로 1-99	소로 1-10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99	10	국지도로	243	소로 1-104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0	10	국지도로	137	소로 1-99	소로 1-9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1	10	국지도로	20	대로 3-6	소로 1-9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2	10	국지도로	129	소로 2-24	소로 1-103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3	10	국지도로	191	소로 1-93	근린공원 6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4	10	국지도로	182	소로 1-103	소로 1-94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5	10	국지도로	93	소로 1-104	소로 1-99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06	10	특수도로	147	대로 3-7	근린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시점은 안동 대로 3-7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8	소로 1-41	공공공지 8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8	소로 1-42	공공공지 5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8	소로 1-41	공공공지 6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8	소로 1-41	공공공지 7	일반도로			
신설	소로	2	9	8	특수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0	8	특수도로	18	대로 3-7	소로 1-4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1	8	특수도로	18	소로 1-42	수변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2	8	특수도로	18	소로 1-42	수변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3	8	특수도로	18	소로 1-42	수변공원 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4	8	특수도로	20	중로 1-14	소로 1-69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5	8	특수도로	28	소로 1-51	소로 1-50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6	8	특수도로	28	소로 1-52	소로 1-51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7	8	특수도로	28	소로 1-53	소로 1-52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8	8	특수도로	28	소로 1-54	소로 1-53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19	8	특수도로	28	소로 1-55	소로 1-5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0	8	특수도로	28	소로 1-35	소로 1-3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1	8	특수도로	28	소로 1-36	소로 1-3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2	8	특수도로	28	소로 1-37	소로 1-36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3	8	특수도로	28	소로 1-38	소로 1-37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2	24	8	국지도로	10	소로 1-102	공공공지 10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2	6	특수도로	20	중로 2-16	어린이공원 8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3	6	특수도로	20	소로 1-68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4	6	특수도로	20	중로 1-11	소로 1-57	보행자 전용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5	6	특수도로	20	소로 1-66	근린공원 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6	6	특수도로	38	소로 1-95	소로 1-94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7	6	특수도로	38	소로 1-96	소로 1-95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소로	3	18	6	특수도로	38	소로 1-103	소로 1-97	보행자 전용도로			

○ 예천군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대로 3-6	·도로신설(B=28m, L=655m)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대로 3-7	·도로신설(B=28m, L=1,258m)	"
-	중로 1-9	·도로신설(B=21m, L=162m)	"
-	중로 1-10	·도로신설(B=21m, L=332m)	"
-	중로 1-11	·도로신설(B=21m, L=1,377m)	"
-	중로 1-12	·도로신설(B=21m, L=325m)	"
-	중로 1-13	·도로신설(B=21m, L=719m)	"
-	중로 1-14	·도로신설(B=21m, L=699m)	"
-	중로 1-15	·도로신설(B=21m, L=232m)	"
-	중로 1-16	·도로신설(B=21m, L=304m)	"
-	중로 1-17	·도로신설(B=21m, L=414m)	"
-	중로 1-18	·도로신설(B=21m, L=100m)	"
-	중로 1-19	·도로신설(B=21m, L=524m)	"
-	중로 2-15	·도로신설(B=16m, L=477m)	"
-	중로 2-16	·도로신설(B=16m, L=536m)	"
-	중로 3-6	·도로신설(B=12m, L=237m)	"
-	소로 1-34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35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36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37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38	·도로신설(B=10m, L=106m)	"
-	소로 1-39	·도로신설(B=10m, L=103m)	"
-	소로 1-40	·도로신설(B=10m, L=88m)	"
-	소로 1-41	·도로신설(B=10m, L=805m)	"
-	소로 1-42	·도로신설(B=10m, L=799m)	"
-	소로 1-43	·도로신설(B=10m, L=20m)	"
-	소로 1-44	·도로신설(B=10m, L=18m)	"
-	소로 1-45	·도로신설(B=10m, L=8m)	"
-	소로 1-46	·도로신설(B=10m, L=18m)	"
-	소로 1-47	·도로신설(B=10m, L=18m)	"
-	소로 1-48	·도로신설(B=10m, L=18m)	"
-	소로 1-49	·도로신설(B=10m, L=20m)	"
-	소로 1-50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51	·도로신설(B=10m, L=105m)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52	·도로신설(B=10m, L=105m)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 1-53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54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55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56	·도로신설(B=10m, L=164m)	"
-	소로 1-57	·도로신설(B=10m, L=202m)	"
-	소로 1-58	·도로신설(B=10m, L=38m)	"
-	소로 1-59	·도로신설(B=10m, L=38m)	"
-	소로 1-60	·도로신설(B=10m, L=38m)	"
-	소로 1-61	·도로신설(B=10m, L=206m)	"
-	소로 1-62	·도로신설(B=10m, L=210m)	"
-	소로 1-63	·도로신설(B=10m, L=84m)	"
-	소로 1-64	·도로신설(B=10m, L=85m)	"
-	소로 1-65	·도로신설(B=10m, L=62m)	"
-	소로 1-66	·도로신설(B=10m, L=229m)	"
-	소로 1-67	·도로신설(B=10m, L=59m)	"
-	소로 1-68	·도로신설(B=10m, L=395m)	"
-	소로 1-69	·도로신설(B=10m, L=178m)	"
-	소로 1-70	·도로신설(B=10m, L=101m)	"
-	소로 1-71	·도로신설(B=10m, L=102m)	"
-	소로 1-72	·도로신설(B=10m, L=103m)	"
-	소로 1-73	·도로신설(B=10m, L=105m)	"
-	소로 1-74	·도로신설(B=10m, L=137m)	"
-	소로 1-75	·도로신설(B=10m, L=70m)	"
-	소로 1-76	·도로신설(B=10m, L=56m)	"
-	소로 1-77	·도로신설(B=10m, L=50m)	"
-	소로 1-78	·도로신설(B=10m, L=69m)	"
-	소로 1-79	·도로신설(B=10m, L=102m)	"
-	소로 1-80	·도로신설(B=10m, L=91m)	"
-	소로 1-81	·도로신설(B=10m, L=127m)	"
-	소로 1-82	·도로신설(B=10m, L=20m)	"
-	소로 1-83	·도로신설(B=10m, L=250m)	"
-	소로 1-84	·도로신설(B=10m, L=496m)	"
-	소로 1-85	·도로신설(B=10m, L=18m)	"
-	소로 1-86	·도로신설(B=10m, L=38m)	"
-	소로 1-87	·도로신설(B=10m, L=37m)	"
-	소로 1-88	·도로신설(B=10m, L=18m)	"
-	소로 1-89	·도로신설(B=10m, L=240m)	"
-	소로 1-90	·도로신설(B=10m, L=294m)	"
-	소로 1-91	·도로신설(B=10m, L=405m)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92	·도로신설(B=10m, L=20m)	"
-	소로 1-93	·도로신설(B=10m, L=360m)	"
-	소로 1-94	·도로신설(B=10m, L=245m)	"
-	소로 1-95	·도로신설(B=10m, L=137m)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소로 1-96	·도로신설(B=10m, L=137m)	"
-	소로 1-97	·도로신설(B=10m, L=137m)	"
-	소로 1-98	·도로신설(B=10m, L=98m)	"
-	소로 1-99	·도로신설(B=10m, L=243m)	"
-	소로 1-100	·도로신설(B=10m, L=137m)	"
-	소로 1-101	·도로신설(B=10m, L=20m)	"
-	소로 1-102	·도로신설(B=10m, L=129m)	"
-	소로 1-103	·도로신설(B=10m, L=191m)	"
-	소로 1-104	·도로신설(B=10m, L=182m)	"
-	소로 1-105	·도로신설(B=10m, L=93m)	"
-	소로 1-106	·도로신설(B=10m, L=147m)	"
-	소로 2-5	·도로신설(B=8m, L=8m)	"
-	소로 2-6	·도로신설(B=8m, L=8m)	"
-	소로 2-7	·도로신설(B=8m, L=8m)	"
-	소로 2-8	·도로신설(B=8m, L=8m)	"
-	소로 2-9	·도로신설(B=8m, L=18m)	"
-	소로 2-10	·도로신설(B=8m, L=18m)	"
-	소로 2-11	·도로신설(B=8m, L=18m)	"
-	소로 2-12	·도로신설(B=8m, L=18m)	"
-	소로 2-13	·도로신설(B=8m, L=18m)	"
-	소로 2-14	·도로신설(B=8m, L=20m)	"
-	소로 2-15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16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17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18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19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20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21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22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23	·도로신설(B=8m, L=28m)	"
-	소로 2-24	·도로신설(B=8m, L=10m)	"
-	소로 3-12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13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14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15	·도로신설(B=6m, L=20m)	"
-	소로 3-16	·도로신설(B=6m, L=38m)	"
-	소로 3-17	·도로신설(B=6m, L=38m)	"
-	소로 3-18	·도로신설(B=6m, L=38m)	"

## 2) 주차장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총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44,628	44,628		
신설	23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2 일원	-	증) 1,052	1,052		(예천11)
신설	24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52 일원	-	증) 1,242	1,242		(예천12)
신설	25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9 일원	-	증) 1,450	1,450		(예천13)
신설	26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4 일원	-	증) 1,534	1,534		(예천14)
신설	27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9-19 일원	-	증) 2,850	2,850		(예천15)
신설	28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62 일원	-	증) 2,065	2,065		(예천16)
신설	29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9 일원	-	증) 2,468	2,468		(안동13)
신설	30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3 일원	-	증) 2,468	2,468		(안동14)
신설	31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1 일원	-	증) 1,158	1,158		(안동15)
신설	32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01-2 일원	-	증) 1,413	1,413		(안동16)
신설	33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4 일원	-	증) 904	904		(안동17)
신설	34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0-1 일원	-	증) 1,502	1,502		(안동18)
신설	35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1-7 일원	-	증) 1,400	1,400		(안동19)
신설	36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 일원	-	증) 8,371	8,371		(안동20) 유수지4 (안동3) 중복결정
신설	37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6-6 일원	-	증) 3,131	3,131		(안동21)
신설	38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0 일원	-	증) 1,157	1,157		(예천17)
신설	39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0-12 일원	-	증) 1,111	1,111		(예천18)
신설	40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21-2 일원	-	증) 1,116	1,116		(예천19)
신설	41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27-1 일원	-	증) 1,107	1,107		(안동22)
신설	42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50-1 일원	-	증) 2,849	2,849		(안동23)
신설	43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84-5 일원	-	증) 4,280	4,280		(안동24)

## ○ 안동시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1,051	31,051		
신설	13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9 일원	-	증) 2,468	2,468		
신설	14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3 일원	-	증) 2,468	2,468		
신설	15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1 일원	-	증) 1,158	1,158		
신설	16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01-2 일원	-	증) 1,413	1,413		
신설	17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4 일원	-	증) 904	904		
신설	18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0-1 일원	-	증) 1,502	1,502		
신설	19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1-7 일원	-	증) 1,400	1,400		
신설	20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 일원	-	증) 8,371	8,371		유수지4 (안동3) 중복결정
신설	21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6-6 일원	-	증) 3,131	3,131		
신설	22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27-1 일원	-	증) 1,107	1,107		
신설	23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50-1 일원	-	증) 2,849	2,849		
신설	24	주차장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84-5 일원	-	증) 4,280	4,280		

## ○ 안동시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주차장	· 주차장 신설(A=2,46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14	주차장	· 주차장 신설(A=2,468㎡)	"
15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158㎡)	"
16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413㎡)	"
17	주차장	· 주차장 신설(A=904㎡)	"
18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502㎡)	"
19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400㎡)	"
20	주차장	· 주차장 신설(A=8,371㎡)	"
21	주차장	· 주차장 신설(A=3,131㎡)	"
22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107㎡)	"
23	주차장	· 주차장 신설(A=2,849㎡)	"
24	주차장	· 주차장 신설(A=4,280㎡)	"

## ○ 예천군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3,577	13,577		
신설	11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2 일원	-	증) 1,052	1,052		
신설	12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52 일원	-	증) 1,242	1,242		
신설	13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9 일원	-	증) 1,450	1,450		
신설	14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4 일원	-	증) 1,534	1,534		
신설	15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9-19 일원	-	증) 2,850	2,850		
신설	16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62 일원	-	증) 2,065	2,065		
신설	17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0 일원	-	증) 1,157	1,157		
신설	18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0-12 일원	-	증) 1,111	1,111		
신설	19	주차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21-2 일원	-	증) 1,116	1,116		

## ○ 예천군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052㎡)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12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242㎡)	"
13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450㎡)	"
14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534㎡)	"
15	주차장	· 주차장 신설(A=2,850㎡)	"
16	주차장	· 주차장 신설(A=2,065㎡)	"
17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157㎡)	"
18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111㎡)	"
19	주차장	· 주차장 신설(A=1,116㎡)	"

나.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7,058	7,058		
신설	3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77 일원	-	증) 1,600	1,600		(예천3)
신설	4	광장	일반광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5-5 일원	-	증) 4,381	4,381		(안동1)
신설	5	광장	일반광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5 일원	-	증) 1,077	1,077		(안동2)

○ 안동시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5,458	5,458		
신설	1	광장	일반광장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5-5 일원	-	증) 4,381	4,381		
신설	2	광장	일반광장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5 일원	-	증) 1,077	1,077		

○ 안동시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	· 광장 신설(A=4,381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2	광장	· 광장 신설(A=1,077m <sup>2</sup> )	· "

○ 예천군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600	1,600		
신설	3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77 일원	-	증) 1,600	1,600		

○ 예천군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광장	· 광장 신설(A=1,600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180,299	1,180,299		
소 계					-	증) 1,115,556	1,115,556		
신설	6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31-1 일원	-	증) 19,493	19,493		(예천4)
신설	7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0 일원	-	증) 284,488	284,488		계
신설	3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43 일원	-	증) 155,310	155,310		(안동3)
신설	5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0 일원	-	증) 129,178	129,178		(예천5)
신설	8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 일원	-	증) 334,276	334,276		계
신설	4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8-1 일원	-	증) 160,233	160,233		(안동4)
신설	6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 일원	-	증) 174,043	174,043		(예천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9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1-1 일원	-	증) 293,720	293,720		(안동5)
신설	10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81-2 일원	-	증) 21,735	21,735		(안동6)
신설	11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51 일원	-	증) 104,621	104,621		(안동7)
신설	12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0-5 일원	-	증) 14,577	14,577		(안동8)
신설	13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6-1 일원	-	증) 42,646	42,646		(안동9)
소 계					-	증) 55,220	55,220		
신설	7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4-26 일원	-	증) 1,500	1,500		(예천4)
신설	8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1 일원	-	증) 1,508	1,508		(예천5)
신설	9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13 일원	-	증) 7,946	7,946		(예천6)
신설	10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8-1 일원	-	증) 13,503	13,503		(예천7)
신설	11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8-24 일원	-	증) 18,900	18,900		(예천8)
신설	12	공원	어린이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54 일원	-	증) 3,300	3,300		(안동4)
신설	13	공원	어린이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8 일원	-	증) 1,600	1,600		(안동5)
신설	14	공원	어린이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8-2 일원	-	증) 4,167	4,167		(안동6)
신설	15	공원	어린이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7-2 일원	-	증) 2,796	2,796		(안동7)
소 계					-	증) 9,523	9,523		
신설	10	공원	소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0-1 일원	-	증) 1,155	1,155		(안동9)
신설	11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1 일원	-	증) 812	812		(예천2)
신설	12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1 일원	-	증) 1,145	1,145		(예천3)
신설	13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18-1 일원	-	증) 1,052	1,052		(예천4)
신설	14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1 일원	-	증) 1,271	1,271		(예천5)
신설	15	공원	소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1 일원	-	증) 1,365	1,365		(안동10)
신설	16	공원	소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04-1 일원	-	증) 1,387	1,387		(안동11)
신설	17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79 일원	-	증) 1,336	1,336		(예천6)

## ○ 안동시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808,612	808,612		
소 계					-	증) 792,842	792,842		
신설	3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43 일원	-	증) 155,310	155,310		
신설	4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8-1 일원	-	증) 160,233	160,233		
신설	5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1-1 일원	-	증) 293,720	293,720		
신설	6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81-2 일원	-	증) 21,735	21,735		
신설	7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51 일원	-	증) 104,621	104,621		
신설	8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0-5 일원	-	증) 14,577	14,577		
신설	9	공원	근린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6-1 일원	-	증) 42,646	42,646		
소 계					-	증) 11,863	11,863		
신설	4	공원	어린이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54 일원	-	증) 3,300	3,300		
신설	5	공원	어린이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8 일원	-	증) 1,600	1,600		
신설	6	공원	어린이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8-2 일원	-	증) 4,167	4,167		
신설	7	공원	어린이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7-2 일원	-	증) 2,796	2,796		
소 계					-	증) 3,907	3,907		
신설	9	공원	소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0-1 일원	-	증) 1,155	1,155		
신설	10	공원	소공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1 일원	-	증) 1,365	1,365		
신설	11	공원	소공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04-1 일원	-	증) 1,387	1,387		

○ 안동시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155,310㎡)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4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160,233㎡)	"
5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293,720㎡)	"
6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21,735㎡)	"
7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104,621㎡)	"
8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14,577㎡)	"
9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42,646㎡)	"
4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3,300㎡)	"
5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1,600㎡)	"
6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4,167㎡)	"
7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2,796㎡)	"
9	소공원	· 소공원 신설(A=1,155㎡)	"
10	소공원	· 소공원 신설(A=1,365㎡)	"
11	소공원	· 소공원 신설(A=1,387㎡)	"

○ 예천군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71,687	371,687		
소 계					-	증) 322,714	322,714		
신설	4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31-1 일원	-	증) 19,493	19,493		
신설	5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0 일원	-	증) 129,178	129,178		
신설	6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4-3 일원	-	증) 174,043	174,043		
소 계					-	증) 43,357	43,357		
신설	4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4-26 일원	-	증) 1,500	1,500		
신설	5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1 일원	-	증) 1,508	1,508		
신설	6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13 일원	-	증) 7,946	7,946		
신설	7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108-1 일원	-	증) 13,503	13,503		
신설	8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8-24 일원	-	증) 18,900	18,900		
소 계					-	증) 5,616	5,616		
신설	2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1 일원	-	증) 812	812		
신설	3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1 일원	-	증) 1,145	1,145		
신설	4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18-1 일원	-	증) 1,052	1,052		
신설	5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1 일원	-	증) 1,271	1,271		
신설	6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79 일원	-	증) 1,336	1,336		

○ 예천군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19,493㎡)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5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129,178㎡)	"
6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A=174,043㎡)	"
4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1,500㎡)	"
5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1,508㎡)	"
6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7,946㎡)	"
7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13,503㎡)	"
8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A=18,900㎡)	"
2	소공원	· 소공원 신설(A=812㎡)	"
3	소공원	· 소공원 신설(A=1,145㎡)	"
4	소공원	· 소공원 신설(A=1,052㎡)	"
5	소공원	· 소공원 신설(A=1,271㎡)	"
6	소공원	· 소공원 신설(A=1,336㎡)	"

3)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36,211	136,211		
소 계					-	증) 44,619	44,619		
신설	2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92-9 일원	-	증) 4,077	4,077		(예천9)
신설	24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2-1 일원	-	증) 1,785	1,785		(안동15)
신설	25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3-3 일원	-	증) 572	572		(안동16)
신설	26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4 일원	-	증) 1,905	1,905		(안동17)
신설	27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6-1 일원	-	증) 1,882	1,882		(안동18)
신설	28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1-1 일원	-	증) 811	811		(안동19)
신설	29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69 일원	-	증) 720	720		(안동20)
신설	30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3 일원	-	증) 1,562	1,562		(안동21)
신설	31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8-1 일원	-	증) 1,640	1,640		(안동22)
신설	32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2 일원	-	증) 1,899	1,899		(안동23)
신설	33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6 일원	-	증) 1,807	1,807		(안동24)
신설	34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18 일원	-	증) 2,040	2,040		(안동25)
신설	35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3 일원	-	증) 1,147	1,147		(안동26)
신설	36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44-1 일원	-	증) 605	605		(안동27)
신설	37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 일원	-	증) 1,474	1,474		(안동28)
신설	38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66 일원	-	증) 892	892		(안동29)
신설	39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8-2 일원	-	증) 2,505	2,505		(안동30)
신설	40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3 일원	-	증) 2,154	2,154		(안동31)
신설	41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4-1 일원	-	증) 1,941	1,941		(안동32)
신설	42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59-1 일원	-	증) 472	472		(안동33)
신설	43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1-2 일원	-	증) 746	746		(안동34)
신설	44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1 일원	-	증) 413	413		(안동3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5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0-1 일원	-	증) 530	530		(안동36)
신설	46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6-2 일원	-	증) 594	594		(안동37)
신설	47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8 일원	-	증) 2,484	2,484		(안동38)
신설	48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82-2 일원	-	증) 686	686		(안동39)
신설	49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23 일원	-	증) 940	940		(안동40)
신설	50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1 일원	-	증) 1,413	1,413		(안동41)
신설	51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7 일원	-	증) 498	498		(안동42)
신설	52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2 일원	-	증) 717	717		(안동43)
신설	53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49-1 일원	-	증) 1,636	1,636		(안동44)
신설	54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4 일원	-	증) 344	344		(안동45)
신설	55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7 일원	-	증) 1,117	1,117		(안동46)
신설	56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0 일원	-	증) 611	611		(안동47)
소 계					-	증) 91,592	91,592		
신설	18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36 일원	-	증) 7,675	7,675		(안동11)
신설	19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4-2 일원	-	증) 22,879	22,879		(안동12)
신설	20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78-4 일원	-	증) 10,055	10,055		(안동13)
신설	21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56-21 일원	-	증) 9,828	9,828		(안동14)
신설	22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208 일원	-	증) 10,463	10,463		(예천9)
신설	23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99-3 일원	-	증) 8,095	8,095		(안동15)
신설	24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143-10 일원	-	증) 15,225	15,225		(안동16)
신설	25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32-1 일원	-	증) 5,656	5,656		(안동17)
신설	26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13-2 일원	-	증) 64	64		(안동18)
신설	27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48-2 일원	-	증) 76	76		(안동19)
신설	28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89-1 일원	-	증) 223	223		(안동20)
신설	29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89-1 일원	-	증) 134	134		(안동21)
신설	30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98-1 일원	-	증) 142	142		(안동22)
신설	31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75-1 일원	-	증) 62	62		(안동23)
신설	32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5 일원	-	증) 1,015	1,015		(안동24)

○ 안동시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21,671	121,671		
소 계					-	증) 40,542	40,542		
신설	15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2-1 일원	-	증) 1,785	1,785		
신설	16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13-3 일원	-	증) 572	572		
신설	17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4 일원	-	증) 1,905	1,905		
신설	18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6-1 일원	-	증) 1,882	1,882		
신설	19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1-1 일원	-	증) 811	811		
신설	20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69 일원	-	증) 720	720		
신설	21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3 일원	-	증) 1,562	1,562		
신설	22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8-1 일원	-	증) 1,640	1,64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23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2 일원	-	증) 1,899	1,899		
신설	24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6 일원	-	증) 1,807	1,807		
신설	25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18 일원	-	증) 2,040	2,040		
신설	26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3 일원	-	증) 1,147	1,147		
신설	27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44-1 일원	-	증) 605	605		
신설	28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2 일원	-	증) 1,474	1,474		
신설	29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66 일원	-	증) 892	892		
신설	30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8-2 일원	-	증) 2,505	2,505		
신설	31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3 일원	-	증) 2,154	2,154		
신설	32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4-1 일원	-	증) 1,941	1,941		
신설	33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59-1 일원	-	증) 472	472		
신설	34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1-2 일원	-	증) 746	746		
신설	35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1 일원	-	증) 413	413		
신설	36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0-1 일원	-	증) 530	530		
신설	37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86-2 일원	-	증) 594	594		
신설	38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8 일원	-	증) 2,484	2,484		
신설	39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82-2 일원	-	증) 686	686		
신설	40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23 일원	-	증) 940	940		
신설	41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2-1 일원	-	증) 1,413	1,413		
신설	42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7 일원	-	증) 498	498		
신설	43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7-2 일원	-	증) 717	717		
신설	44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49-1 일원	-	증) 1,636	1,636		
신설	45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4 일원	-	증) 344	344		
신설	46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7 일원	-	증) 1,117	1,117		
신설	47	녹지	완충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5-10 일원	-	증) 611	611		
소 계					-	증) 81,129	81,129		
신설	11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9-36 일원	-	증) 7,675	7,675		
신설	12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4-2 일원	-	증) 22,879	22,879		
신설	13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78-4 일원	-	증) 10,055	10,055		
신설	14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56-21 일원	-	증) 9,828	9,828		
신설	15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99-3 일원	-	증) 8,095	8,095		
신설	16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143-10 일원	-	증) 15,225	15,225		
신설	17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32-1 일원	-	증) 5,656	5,656		
신설	18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13-2 일원	-	증) 64	64		
신설	19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48-2 일원	-	증) 76	76		
신설	20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89-1 일원	-	증) 223	223		
신설	21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89-1 일원	-	증) 134	134		
신설	22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98-1 일원	-	증) 142	142		
신설	23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75-1 일원	-	증) 62	62		
신설	24	녹지	경관녹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5 일원	-	증) 1,015	1,015		

## ○안동시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785㎡)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16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572㎡)	"
17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905㎡)	"
18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882㎡)	"
19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811㎡)	"
20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720㎡)	"
2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562㎡)	"
22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640㎡)	"
23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899㎡)	"
24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807㎡)	"
25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2,040㎡)	"
26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147㎡)	"
27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605㎡)	"
28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474㎡)	"
29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892㎡)	"
30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2,505㎡)	"
3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2,154㎡)	"
32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941㎡)	"
33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472㎡)	"
34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746㎡)	"
35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413㎡)	"
36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530㎡)	"
37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594㎡)	"
38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2,484㎡)	"
39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686㎡)	"
40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940㎡)	"
4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413㎡)	"
42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498㎡)	"
43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717㎡)	"
44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636㎡)	"
45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344㎡)	"
46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1,117㎡)	"
47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611㎡)	"
1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7,675㎡)	"
1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22,879㎡)	"
1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10,055㎡)	"
14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9,828㎡)	"
15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8,095㎡)	"
16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15,225㎡)	"
17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5,656㎡)	"
18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64㎡)	"
19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76㎡)	"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0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223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2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134m <sup>2</sup> )	"
2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142m <sup>2</sup> )	"
2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62m <sup>2</sup> )	"
24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1,015m <sup>2</sup> )	"

○ 예천군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4,540	14,540		
소 계					-	증) 4,077	4,077		
신설	9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92-9 일원	-	증) 4,077	4,077		
소 계					-	증) 10,463	10,463		
신설	9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208 일원	-	증) 10,463	10,463		

○ 예천군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A=4,077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9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A=10,463m <sup>2</sup> )	"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807	807		
신설	8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1-3 일원	-	증) 80	80		(예천5)
신설	9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1-4 일원	-	증) 80	80		(예천6)
신설	10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4 일원	-	증) 80	80		(예천7)
신설	11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7-2 일원	-	증) 61	61		(안동10)
신설	12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20 일원	-	증) 56	56		(안동11)
신설	13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3 일원	-	증) 56	56		(안동12)
신설	14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19-1 일원	-	증) 80	80		(안동13)
신설	15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1-2 일원	-	증) 54	54		(안동14)
신설	16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2 일원	-	증) 80	80		(예천8)
신설	23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5 일원	-	증) 100	100		(예천9)
신설	24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84-22 일원	-	증) 80	80		(예천10)

○ 안동시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07	307		
신설	10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7-2 일원	-	증) 61	61		
신설	11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20 일원	-	증) 56	56		
신설	12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3 일원	-	증) 56	56		
신설	13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19-1 일원	-	증) 80	80		
신설	14	공공공지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1-2 일원	-	증) 54	54		

○ 안동시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61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11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56m <sup>2</sup> )	"
12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56m <sup>2</sup> )	"
13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80m <sup>2</sup> )	"
14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54m <sup>2</sup> )	"

○ 예천군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500	500		
신설	5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1-3 일원	-	증) 80	80		
신설	6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81-4 일원	-	증) 80	80		
신설	7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4 일원	-	증) 80	80		
신설	8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55-2 일원	-	증) 80	80		
신설	9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5 일원	-	증) 100	100		
신설	10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산84-22 일원	-	증) 80	80		

○ 예천군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80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6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80m <sup>2</sup> )	"
7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80m <sup>2</sup> )	"
8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80m <sup>2</sup> )	"
9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100m <sup>2</sup> )	"
10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A=80m <sup>2</sup>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560	3,560		
신설	2	전기공급설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79 일원	-	증) 3,560	3,560		(안동1)

○ 안동시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560	3,560		
신설	1	전기공급설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79 일원	-	증) 3,560	3,560		

○ 안동시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변전소) 신설(A=3,560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246,034	246,034		
소 계					-	증) 113,081	113,081		
신설	3	학교	초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56-3 일원	-	증) 19,514	19,514		(안동2)
신설	4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84-2 일원	-	증) 17,575	17,575		(예천2)
신설	5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8-19 일원	-	증) 18,815	18,815		(예천3)
신설	6	학교	초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9 일원	-	증) 19,608	19,608		(안동3)
신설	7	학교	초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6 일원	-	증) 19,719	19,719		(안동4)
신설	8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5 일원	-	증) 17,850	17,850		(예천4)
소 계					-	증) 72,239	72,239		
신설	2	학교	중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90-2 일원	-	증) 17,077	17,077		(예천1)
신설	3	학교	중학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800 일원	-	증) 18,987	18,987		(안동2)
신설	4	학교	중학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6-11 일원	-	증) 18,643	18,643		(안동3)
신설	5	학교	중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3-1 일원	-	증) 17,532	17,532		(예천2)
소 계					-	증) 60,714	60,714		
신설	2	학교	고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8 일원	-	증) 22,450	22,450		(예천2)
신설	3	학교	고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411-2 일원	-	증) 38,264	38,264		(안동1)

○ 안동시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34,735	134,735		
소 계					-	증) 58,841	58,841		
신설	2	학교	초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56-3 일원	-	증) 19,514	19,514		
신설	3	학교	초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9 일원	-	증) 19,608	19,608		
신설	4	학교	초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6 일원	-	증) 19,719	19,719		
소 계					-	증) 37,630	37,630		
신설	2	학교	중학교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800 일원	-	증) 18,987	18,987		
신설	3	학교	중학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신6-11 일원	-	증) 18,643	18,643		
소 계					-	증) 38,264	38,264		
신설	1	학교	고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411-2 일원	-	증) 38,264	38,264		

○ 안동시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설(A=19,514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3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설(A=19,608m <sup>2</sup> )	"
4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설(A=19,719m <sup>2</sup> )	"
2	중학교	· 중학교 신설(A=18,987m <sup>2</sup> )	"
3	중학교	· 중학교 신설(A=18,643m <sup>2</sup> )	"
1	고등학교	· 고등학교 신설(A=38,264m <sup>2</sup> )	"

○ 예천군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11,299	111,299		
소 계					-	증) 54,240	54,240		
신설	2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84-2 일원	-	증) 17,575	17,575		
신설	3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8-19 일원	-	증) 18,815	18,815		
신설	4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5 일원	-	증) 17,850	17,850		
소 계					-	증) 34,609	34,609		
신설	1	학교	중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90-2 일원	-	증) 17,077	17,077		
신설	2	학교	중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3-1 일원	-	증) 17,532	17,532		
소 계					-	증) 22,450	22,450		
신설	2	학교	고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8 일원	-	증) 22,450	22,450		

○ 예천군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설(A=17,575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3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설(A=18,815m <sup>2</sup> )	"
4	초등학교	· 초등학교 신설(A=17,850m <sup>2</sup> )	"
1	중학교	· 중학교 신설(A=17,077m <sup>2</sup> )	"
2	중학교	· 중학교 신설(A=17,532m <sup>2</sup> )	"
2	고등학교	· 고등학교 신설(A=22,450m <sup>2</sup> )	"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655	1,655		
신설	5	공공청사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1 일원	-	증) 1,655	1,655		(안동5) 지구대 (파출소)

○ 안동시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655	1,655		
신설	5	공공청사	-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1 일원	-	증) 1,655	1,655		지구대 (파출소)

○ 안동시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A=1,655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마. 방재시설

1) 우수지

○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9,935	9,935		
신설	4	우수지	저류시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 일원	-	증) 8,371	8,371		(안동3) 주차장36 (안동20) 중복결정
신설	5	우수지	저류시설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5-4 일원	-	증) 1,564	1,564		(안동2)

○ 안동시 우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9,935	9,935		
신설	2	우수지	저류시설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5-4 일원	-	증) 1,564	1,564		
신설	3	우수지	저류시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 일원	-	증) 8,371	8,371		주차장36 (안동20) 중복결정

○ 안동시 우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우수지	· 우수지 신설(A=1,564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3	우수지	· 우수지 신설(A=8,371m <sup>2</sup> )	"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61,745	161,745		
신설	1	종합의료시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 일원	-	증) 136,793	136,793		(안동1)
신설	2	종합의료시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12-4 일원	-	증) 24,952	24,952		(안동2)

○ 안동시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161,745	161,745		
신설	1	종합의료시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 일원	-	증) 136,793	136,793		
신설	2	종합의료시설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12-4 일원	-	증) 24,952	24,952		

○ 안동시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신설(A=136,793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2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신설(A=24,952m <sup>2</sup> )	"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2,908	2,908		
신설	3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59-12 일원	-	증) 368	368		(예천2) 오수중계 펌프장
신설	4	공공하수처리시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51 일원	-	증) 2,540	2,540		(안동2) 오수중계 펌프장

○ 안동시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2,540	2,540		
신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51 일원	-	증) 2,540	2,540		오수중계 펌프장

○ 안동시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하수 처리시설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A=2,540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예천군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증) 368	368		
신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59-12 일원	-	증) 368	368		오수중계 펌프장

○ 예천군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하수 처리시설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A=368m <sup>2</sup> )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른 신설

## 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단독주택 및 특화주거용지

##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합계		299,926	1,060필지	299,926	
소계		38,978	141필지	38,978	
D-7	1	1,176	1	292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94	
			3	300	
			4	290	
	2	1,740	1	300	
			2	300	
			3	300	
			4	300	
			5	294	
			6	246	
	3	2,013	1	246	
			2	294	
			3	300	
			4	294	
			5	293	
			6	293	
			7	293	
	4	1,554	1	259	
			2	259	
			3	259	
			4	259	
			5	259	
			6	259	
	5	2,161	1	271	
			2	272	
			3	272	
			4	265	
			5	265	
			6	272	
			7	272	
			8	272	
	6	3,699	1	259	
			2	266	
			3	266	
			4	266	
			5	266	
6			266		
7			260		
8			260		
9			266		
10			266		
11			266		
12			266		
13			266		
14			26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7	7	1,709	1	298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304	
			3	302	
			4	279	
			5	266	
			6	260	
	8	2,795	1	274	
			2	280	
			3	281	
			4	281	
			5	281	
			6	281	
			7	281	
			8	281	
			9	281	
			10	274	
	9	2,161	1	271	
			2	272	
			3	272	
			4	265	
			5	265	
			6	272	
			7	272	
			8	272	
	10	3,619	1	291	
			2	296	
			3	296	
			4	296	
			5	296	
			6	374	
			7	295	
			8	296	
			9	296	
			10	296	
			11	296	
			12	291	
	11	272	1	272	
	12	2,146	1	263	
			2	270	
			3	270	
			4	270	
			5	270	
			6	270	
			7	270	
			8	263	
	13	1,531	1	258	
			2	257	
			3	251	
4			251		
5			257		
6			25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7	14	2,023	1	260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66	
			3	266	
			4	259	
			5	370	
			6	304	
			7	298	
	15	252	1	252	
	16	1,685	1	281	
			2	281	
			3	281	
			4	281	
			5	281	
			6	280	
	17	2,161	1	271	
			2	272	
			3	272	
			4	265	
			5	265	
			6	272	
			7	272	
8			272		
18	1,312	1	260		
		2	266		
		3	267		
		4	259		
		5	260		
19	2,457	1	267		
		2	273		
		3	273		
		4	273		
		5	316		
		6	242		
		7	273		
		8	273		
		9	267		
20	1,146	1	280		
		2	279		
		3	300		
		4	287		
21	1,366	1	266		
		2	280		
		3	280		
		4	280		
		5	260		
소계	58,926	211필지	58,926		
D-8	1	2,138	1	266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66	
			3	266	
			4	278	
			5	264	
			6	266	
			7	266	
			8	26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8	2	3,741	1	274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66			
			3	266			
			4	266			
			5	266			
			6	266			
			7	260			
			8	260			
			9	266			
			10	266			
			11	266			
			12	266			
			13	266			
			14	287			
	3	3,310	1	269			
			2	275			
			3	275			
			4	275			
			5	275			
			6	268			
			7	300			
			8	276			
			9	276			
			10	276			
			11	276			
			12	269			
			4	1,139		1	281
						2	286
	3	286					
	4	286					
	5	3,676	1	222			
			2	266			
			3	266			
			4	266			
			5	266			
			6	266			
			7	278			
			8	264			
			9	266			
			10	266			
			11	266			
			12	266			
			13	266			
			14	252			
	6	2,760	1	309			
			2	266			
			3	266			
			4	266			
			5	266			
			6	266			
			7	266			
			8	266			
9			266				
10			32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8	7	2,712	1	279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5	
			3	275	
			4	275	
			5	335	
			6	252	
			7	257	
			8	257	
			9	257	
			10	250	
	8	2,101	1	300	
			2	300	
			3	300	
			4	300	
			5	300	
			6	300	
			7	301	
	9	3,764	1	266	
			2	266	
			3	266	
			4	266	
			5	266	
			6	266	
			7	278	
			8	264	
			9	266	
			10	266	
			11	266	
			12	266	
			13	266	
			14	296	
	10	341,820	1	275	
			2	275	
			3	275	
			4	275	
			5	280	
			6	281	
			7	276	
			8	276	
			9	276	
			10	276	
	11	2,264	1	301	
			2	308	
3			308		
4			288		
5			237		
6			274		
7			277		
8			27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8	12	3,863	1	268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6			
			3	276			
			4	276			
			5	276			
			6	276			
			7	278			
			8	264			
			9	275			
			10	275			
			11	275			
			12	275			
			13	275			
			14	298			
	13	341,820	1	299			
			2	294			
			3	312			
			4	312			
			5	312			
			6	312			
			7	302			
			8	290			
			9	270			
			10	270			
			11	270			
			12	277			
			14	3,567		1	287
						2	286
	3	285					
	4	312					
	5	312					
	6	312					
	7	312					
	8	312					
	9	312					
	10	312					
	11	312					
	12	294					
	13	345					
	15	3,826				1	275
			2	276			
			3	276			
			4	276			
			5	276			
			6	276			
			7	261			
			8	268			
			9	275			
			10	275			
			11	275			
			12	275			
			13	275			
14			26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8	16	3,951	1	302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6	
			3	276	
			4	276	
			5	276	
			6	276	
			7	287	
			8	274	
			9	275	
			10	275	
			11	275	
			12	275	
			13	275	
			14	333	
	17	1,739	1	296	
			2	280	
			3	329	
			4	274	
			5	280	
			6	280	
	18	1,418	1	243	
			2	242	
			3	265	
			4	322	
			5	346	
	19	2,802	1	281	
			2	280	
			3	280	
			4	280	
			5	286	
			6	269	
			7	252	
			8	257	
			9	304	
			10	313	
	20	2,582	1	290	
			2	290	
			3	286	
			4	286	
			5	286	
			6	286	
			7	286	
8			286		
9			286		
21	862	1	288		
		2	287		
		3	28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소계		51,678	180필지	51,678	
D-9	1	2,538	1	249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2	255	
			3	261	
			4	255	
			5	249	
			6	249	
			7	255	
			8	261	
			9	255	
			10	249	
	2	2,227	1	274	
			2	280	
			3	280	
			4	280	
			5	280	
			6	280	
			7	280	
			8	273	
	3	2,217	1	280	
			2	280	
			3	280	
			4	264	
			5	273	
			6	280	
			7	280	
			8	280	
	4	2,227	1	273	
			2	280	
			3	280	
			4	280	
			5	280	
			6	280	
			7	280	
			8	274	
	5	1,120	1	280	
			2	280	
			3	280	
			4	280	
	6	908	1	297	
			2	294	
3			317		
7	2,853	1	280		
		2	285		
		3	285		
		4	285		
		5	279		
		6	279		
		7	285		
		8	285		
		9	285		
		10	30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9	8	1,726	1	283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90	
			3	290	
			4	290	
			5	290	
			6	283	
	9	1,723	1	290	
			2	290	
			3	283	
			4	280	
			5	290	
			6	290	
	10	1,949	1	312	
			2	280	
			3	248	
			4	272	
			5	300	
			6	286	
			7	251	
	11	711	1	236	
			2	226	
			3	249	
	12	2,473	1	241	
			2	260	
			3	292	
			4	293	
			5	288	
			6	282	
			7	295	
			8	268	
			9	254	
	13	2,328	1	285	
			2	292	
			3	292	
			4	285	
			5	285	
			6	291	
			7	292	
			8	306	
	14	2,585	1	330	
			2	288	
			3	284	
			4	281	
			5	281	
			6	282	
			7	282	
			8	282	
			9	275	
15	1,185	1	297		
		2	296		
		3	296		
		4	29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9	16	3,005	1	296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96	
			3	296	
			4	297	
			5	318	
			6	318	
			7	296	
			8	296	
			9	296	
			10	296	
	17	2,397	1	295	
			2	302	
			3	301	
			4	301	
			5	301	
			6	301	
			7	301	
			8	295	
	18	2,395	1	302	
			2	301	
			3	301	
			4	292	
			5	295	
			6	301	
			7	301	
			8	302	
	19	1,755	1	292	
			2	292	
			3	292	
			4	293	
			5	293	
			6	293	
	20	2,966	1	293	
			2	293	
			3	293	
			4	293	
			5	313	
			6	313	
			7	292	
			8	292	
			9	292	
			10	292	
	21	2,367	1	291	
			2	298	
			3	298	
			4	298	
			5	297	
			6	297	
7			297		
8			29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9	22	2,367	1	298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98			
			3	298			
			4	291			
			5	291			
			6	297			
			7	297			
			8	297			
	23	1,494	1	294			
			2	300			
			3	300			
			4	300			
			5	300			
	24	2,948	1	294			
			2	295			
			3	295			
			4	295			
			5	295			
			6	295			
			7	295			
			8	295			
			9	295			
			10	294			
	25	1,214	1	305			
			2	305			
			3	305			
			4	299			
	소 계		27,043	92필지		27,043	
	D-10	1	2,771	1		279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5	
				3		275	
				4		275	
5				276			
6				276			
7				275			
8				275			
9				276			
10				289			
2		2,222	1	276			
			2	275			
			3	275			
			4	285			
			5	285			
			6	275			
			7	275			
			8	276			
3		1,724	1	271			
			2	293			
			3	294			
			4	294			
			5	294			
			6	27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0	4	2,781	1	289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6	
			3	275	
			4	275	
			5	276	
			6	276	
			7	275	
			8	275	
			9	275	
			10	289	
	5	2,227	1	276	
			2	275	
			3	275	
			4	285	
			5	290	
			6	275	
			7	275	
			8	276	
	6	2,420	1	299	
			2	304	
			3	304	
			4	304	
			5	304	
			6	304	
			7	304	
			8	297	
	7	1,711	1	285	
			2	285	
			3	283	
			4	289	
			5	284	
			6	285	
	8	3,244	1	327	
			2	316	
			3	316	
			4	316	
			5	329	
			6	347	
			7	331	
			8	316	
			9	316	
			10	330	
	9	2,668	1	327	
			2	326	
3			316		
4			325		
5			354		
6			334		
7			344		
8			342		
10	1,018	1	250		
		2	263		
		3	262		
		4	24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0	11	3,034	1	309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306	
			3	302	
			4	300	
			5	295	
			6	302	
			7	302	
			8	307	
			9	305	
			10	306	
	12	1,223	1	303	
			2	297	
			3	309	
			4	314	
소 계		61,101	206필지	61,101	
D-11	1	1,012	1	237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62	
			3	263	
			4	250	
	2	1,805	1	294	
			2	300	
			3	300	
			4	300	
			5	300	
			6	311	
	3	1,484	1	284	
			2	300	
			3	300	
			4	300	
			5	300	
	4	1,466	1	300	
			2	300	
			3	300	
			4	300	
			5	266	
	5	3,548	1	294	
			2	300	
			3	300	
			4	286	
5			300		
6			294		
7			294		
8			300		
9			286		
10			300		
11			300		
12			29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1	6	2,988	1	294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300	
			3	300	
			4	300	
			5	300	
			6	300	
			7	300	
			8	300	
			9	300	
			10	294	
	7	2,945	1	300	
			2	300	
			3	300	
			4	300	
			5	273	
			6	272	
			7	300	
			8	300	
			9	300	
			10	300	
	8	1,315	1	257	
			2	270	
			3	270	
			4	270	
			5	248	
	9	1,948	1	334	
			2	320	
			3	320	
			4	320	
			5	320	
			6	334	
	10	2,988	1	294	
			2	300	
			3	300	
			4	300	
			5	300	
			6	300	
			7	300	
			8	300	
			9	300	
10			294		
11	2,945	1	300		
		2	300		
		3	300		
		4	300		
		5	273		
		6	272		
		7	300		
		8	300		
		9	300		
		10	30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1	12	3,545	1	294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300	
			3	300	
			4	286	
			5	300	
			6	294	
			7	291	
			8	300	
			9	286	
			10	300	
			11	300	
			12	294	
	13	2,985	1	294	
			2	300	
			3	300	
			4	300	
			5	300	
			6	300	
			7	300	
			8	300	
			9	300	
			10	291	
	14	1,360	1	340	
			2	340	
			3	340	
			4	340	
	15	1,324	1	250	
			2	270	
			3	270	
			4	270	
			5	264	
	16	3,545	1	294	
			2	300	
			3	300	
			4	286	
			5	300	
			6	291	
			7	294	
			8	300	
			9	286	
			10	300	
			11	300	
			12	294	
	17	1,130	1	280	
			2	271	
			3	280	
			4	299	
	18	798	1	262	
			2	263	
			3	27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1	19	3,822	1	285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66	
			3	266	
			4	310	
			5	310	
			6	282	
			7	288	
			8	326	
			9	334	
			10	289	
			11	300	
			12	278	
			13	288	
	20	914	1	284	
			2	321	
			3	309	
	21	1,163	1	295	
			2	295	
			3	295	
			4	278	
	22	1,078	1	269	
			2	268	
			3	268	
			4	273	
	23	727	1	360	
			2	367	
	24	611	1	306	
			2	305	
	25	855	1	284	
			2	286	
			3	285	
	26	937	1	318	
			2	317	
			3	302	
	27	884	1	284	
			2	300	
			3	300	
	28	1,194	1	284	
			2	300	
			3	300	
			4	310	
	29	1,214	1	303	
			2	309	
			3	309	
			4	293	
	30	2,340	1	304	
			2	315	
			3	315	
4			319		
5			269		
6			273		
7			273		
8			27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1	31	2,998	1	327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323			
			3	304			
			4	302			
			5	318			
			6	267			
			7	302			
			8	299			
			9	280			
			10	276			
	32	683	1	348			
			2	335			
	33	626	1	313			
			2	313			
	34	887	1	298			
			2	298			
			3	291			
	35	701	1	357			
			2	344			
	36	336	1	336			
	소계		62,200	230필지		62,200	
	D-12	1	1,920	1		300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0	
3				270			
4				270			
5				270			
6				270			
7				270			
2		2,430	1	270			
			2	270			
			3	270			
			4	270			
			5	270			
			6	270			
			7	270			
3		1,052	1	260			
			2	266			
			3	266			
			4	260			
4		1,052	1	260			
			2	266			
			3	266			
			4	260			
5		1,052	1	260			
			2	266			
			3	266			
			4	260			
6		1,052	1	260			
			2	266			
			3	266			
			4	26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2	7	1,051	1	259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66	
			3	266	
			4	260	
	8	1,052	1	260	
			2	266	
			3	266	
			4	260	
	9	754	1	374	
			2	380	
	10	1,052	1	266	
			2	260	
			3	260	
			4	266	
	11	1,639	1	266	
			2	266	
			3	287	
			4	288	
			5	266	
			6	266	
	12	1,639	1	266	
			2	266	
			3	287	
			4	288	
			5	266	
			6	266	
	13	1,639	1	266	
			2	266	
			3	287	
			4	288	
			5	266	
			6	266	
	14	1,639	1	266	
			2	266	
			3	287	
			4	288	
			5	266	
			6	266	
	15	1,639	1	266	
			2	266	
			3	287	
			4	288	
5			266		
6			266		
16	1,205	1	300		
		2	306		
		3	306		
		4	293		
17	1,320	1	258		
		2	270		
		3	270		
		4	270		
		5	25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2	18	1,074	1	270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0	
			3	270	
			4	264	
	19	2,430	1	270	
			2	270	
			3	270	
			4	270	
			5	270	
			6	270	
			7	270	
			8	270	
	20	754	1	374	
			2	380	
	21	1,639	1	287	
			2	266	
			3	266	
			4	266	
			5	266	
			6	288	
	22	1,639	1	287	
			2	266	
			3	266	
			4	266	
			5	266	
			6	288	
	23	1,639	1	287	
			2	266	
			3	266	
			4	266	
			5	266	
			6	288	
	24	1,639	1	287	
			2	266	
			3	266	
			4	266	
			5	266	
			6	288	
	25	1,052	1	266	
			2	260	
			3	260	
			4	266	
	26	1,052	1	266	
			2	260	
3			260		
4			266		
27	1,054	1	266		
		2	260		
		3	262		
		4	26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2	28	1,068	1	258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0	
			3	270	
			4	270	
	29	1,300	1	261	
			2	261	
			3	261	
			4	261	
			5	256	
	30	2,772	1	252	
			2	252	
			3	252	
			4	252	
			5	252	
			6	252	
			7	252	
			8	252	
			9	252	
			10	252	
			11	252	
	31	2,308	1	252	
			2	252	
			3	252	
			4	252	
			5	264	
			6	262	
			7	263	
			8	263	
			9	248	
	32	2,258	1	291	
			2	299	
			3	286	
			4	329	
			5	261	
			6	271	
			7	266	
			8	255	
	33	1,247	1	255	
			2	255	
			3	245	
4			246		
5			246		
34	1,890	1	277		
		2	274		
		3	253		
		4	254		
		5	280		
		6	274		
		7	27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D-12	35	2,144	1	246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획지분할 불허
			2	277	
			3	277	
			4	267	
			5	260	
			6	275	
			7	274	
			8	268	
	36	3,409	1	297	
			2	293	
			3	293	
			4	293	
			5	293	
			6	286	
			7	266	
			8	281	
			9	281	
			10	281	
			11	281	
			12	264	
	37	1,145	1	296	
			2	289	
			3	277	
			4	283	
	38	2,869	1	254	
			2	248	
			3	248	
			4	248	
			5	248	
			6	241	
			7	268	
			8	283	
			9	283	
			10	283	
			11	265	
	39	1,225	1	238	
			2	251	
			3	251	
			4	251	
			5	234	
	40	1,406	1	272	
			2	285	
			3	285	
			4	285	
5			279		

## 2) 특화주거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86,813	4필지	186,813	
H-1	-	27,975	1	27,975	획지 분할, 합병 불허
H-2	-	106,160	1	106,160	
H-3	-	34,550	1	34,550	
H-4	-	18,128	1	18,128	

##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365,678	33필지	1,365,678	
A-2	-	69,155	1	32,824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획지분할 불허
			2	36,331	
A-3	-	56,400	1	30,755	
			2	25,645	
A-4	-	54,170	1	20,287	
			2	33,883	
A-5	-	103,207	1	39,913	
			2	63,294	
A-6	-	60,172	1	38,693	
			2	21,479	
A-7	-	47,605	1	47,605	
A-8	-	23,197	1	23,197	
A-9	-	54,685	1	54,685	
A-10	-	49,805	1	20,642	
			2	29,163	
A-11	-	51,320	1	26,424	
			2	24,896	
B-9	-	48,206	1	48,206	
B-10	-	69,144	1	47,857	
			2	21,287	
B-11	-	41,794	1	41,794	
B-12	-	36,666	1	36,666	
B-13	-	56,416	1	56,416	
B-14	-	30,038	1	30,038	
B-15	-	52,725	1	52,725	
B-16	-	58,415	1	58,415	
B-17	-	54,673	1	54,673	
B-18	-	64,450	1	64,450	
B-19	-	71,949	1	71,949	
B-20	-	34,239	1	34,239	
B-21	-	43,724	1	43,724	
C-1	-	50,392	1	50,392	
C-2	-	83,131	1	83,131	

##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4,591	93필지	44,591	
근생14	-	348	1	348	
근생15	-	893	1	421	
			2	472	
근생16	-	1,995	1	495	
			2	500	
			3	500	
			4	500	
근생17	-	1,255	1	420	
			2	420	
			3	415	
근생18	-	1,435	1	477	
			2	480	
			3	478	
근생19	-	2,655	1	428	
			2	440	
			3	440	
			4	440	
			5	440	
			6	467	
근생20	-	2,132	1	418	
			2	430	
			3	430	
			4	430	
			5	424	
근생21	-	1,892	1	470	
			2	474	
			3	474	
			4	474	
근생22	-	1,970	1	500	
			2	500	
			3	500	
			4	470	
근생23	-	1,637	1	557	
			2	580	
			3	500	
근생24	-	384	1	384	
근생25	-	1,669	1	409	
			2	420	
			3	420	
			4	420	
근생26	-	1,603	1	393	
			2	417	
			3	416	
			4	377	
근생27	-	459	1	459	
근생28	-	943	1	943	
근생29	-	1,000	1	1,000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획지분할 불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근생30	-	2,282	1	460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획지분할 불허
			2	460	
			3	460	
			4	460	
			5	442	
근생31	-	1,767	1	477	
			2	430	
			3	430	
			4	430	
근생32	-	734	1	360	
			2	374	
근생33		734	1	360	
			2	374	
근생34		354	1	354	
근생35	-	897	1	455	
			2	442	
근생36	-	2,073	1	414	
			2	415	
			3	415	
			4	415	
			5	414	
근생37	-	3,534	1	428	
			2	441	
			3	441	
			4	715	
			5	507	
			6	507	
			7	495	
근생38	-	1,315	1	428	
			2	446	
			3	441	
근생39	-	5,716	1	551	
			2	557	
			3	531	
			4	520	
			5	476	
			6	476	
			7	746	
			8	765	
			9	549	
			10	545	
근생40	-	1,179	1	597	
			2	582	
근생41	-	1,736	1	560	
			2	597	
			3	579	

## 라. 상업·업무용지

## 1)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계		92,013	38필지	92,013	
상22	-	12,266	1	3,160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범위 내 2필지 이내 분할허용 가구단위내의 연접한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3,168	
			3	5,938	
상23	-	6,426	1	3,126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범위 내 2필지 이내 분할허용 가구단위내의 연접한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1,650	
			3	1,650	
상24	-	4,764	1	1,600	
			2	1,564	
			3	1,600	
상25	-	4,022	1	2,011	
			2	2,011	
상26	-	16,680	1	16,680	대지분할 가능선에 따라 분할 허용 가구단위내의 연접한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상27	-	5,210	1	1,740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범위 내 2필지 이내 분할허용 가구단위내의 연접한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1,730	
			3	1,740	
상28	-	5,215	1	1,715	
			2	1,750	
			3	1,750	
상29	-	5,093	1	1,700	
			2	1,700	
			3	1,693	
상30	-	4,123	1	1,363	
			2	1,380	
			3	1,380	
상31	-	4,123	1	1,363	
			2	1,380	
			3	1,380	
상32	-	5,093	1	1,700	
			2	1,700	
			3	1,693	
상33	-	9,499	1	2,369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범위 내 2필지 이내 분할허용 가구단위내의 연접한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공동개발 권장
			2	2,385	
			3	2,385	
			4	2,360	
상34	-	9,499	1	2,385	
			2	2,369	
			3	2,360	
			4	2,385	

2) 특화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15,861	11필지	15,861	
특상11	-	8,241	1	1,250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범위 내 2필지 이내 분할허용 연접한 2개획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1,250	
			3	1,200	
			4	1,742	
			5	1,400	
			6	1,399	
특상12	-	7,620	1	1,900	
			2	1,314	
			3	1,540	
			4	1,495	
			5	1,371	

3)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96,254	11필지	196,254		
업38	-	27,486	1	2,899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범위 내 2필지 이내 분할허용 가구단위내의 연접한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2,914		
			3	6,952		
			4	6,310		
			5	5,545		
			6	2,866		
업39	-	12,447	1	3,580		
			2	3,825		
			3	5,042		
업40	-	73,072	1	73,072		필요시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 허용
업41	-	83,249	1	83,249		가구단위내의 연접한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공공청사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655	1필지		
공청5	-	1,655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79-1번지 일원		지구대(파출소)

2) 복합커뮤니티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0,379	4필지		
커2	-	5,210	1	2,605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범위 내 2필지 이내 분할허용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2,605	
커3	-	5,169	1	2,551	
			2	2,648	

## 3) 교육시설

## 가) 유치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번호	면적(m <sup>2</sup> )	
계		16,078	5필지		16,078
유4	-	3,067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3번지 일원		3,067
유5	-	3,82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4번지 일원		3,826
유6	-	3,021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90-1번지 일원		3,021
유7	-	3,10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95-2번지 일원		3,107
유8	-	3,05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86-1번지 일원		3,057

## 나) 초등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sup>2</sup> )	
계		113,081	6필지		113,081
초3	-	19,514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456-3번지 일원		19,514
초4	-	17,57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84-2번지 일원		17,575
초5	-	18,81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8-19번지 일원		18,815
초6	-	19,608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9번지 일원		19,608
초7	-	19,719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50-6번지 일원		19,719
초8	-	17,85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5번지 일원		17,850

## 다) 중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계		72,239	4필지		72,239
중2	-	17,077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90-2번지 일원		17,077
중3	-	18,98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800번지 일원		18,987
중4	-	18,643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산6-11번지 일원		18,643
중5	-	17,53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3-1번지 일원		17,532

## 라) 고등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계		60,714	2필지		60,714
고2	-	22,45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8번지 일원		22,450
고3	-	38,264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411-2번지 일원		특성화고교

## 4) 문화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m <sup>2</sup> )	
계		25,695	1필지		25,695
문4	-	25,69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72-1번지 일원		25,695

## 5) 청소년수련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2,100	1필지		12,100
청1	-	12,100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87번지 일원		12,100

## 6) 체육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33,203	3필지		133,203
체육1	-	51,62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05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체육2	-	33,709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018-1번지 일원		스포츠컴플렉스
체육3	-	47,873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61번지 일원		스포츠컴플렉스

## 7) 테마파크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26,030	1필지		226,030
테마1	-	226,030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 일원		226,030

## 8) 종합의료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61,745	2필지		161,745
의1	-	136,793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49-1번지 일원		136,793
의2	-	24,952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12-4번지 일원		24,952

## 9) 한옥형호텔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8,914	1필지		38,914
호텔2	-	38,914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51-6번지 일원		38,914

## 10) 복합물류센터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4,000	1필지		34,000
물류1	-	34,000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2-4번지 일원		34,000

## 11) 종교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2,348	2필지		12,348
종5	-	8,353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33-1번지 일원		8,353
종6	-	3,99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92-3번지 일원		3,995

12)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4,628	21필지		44,628
주23	-	1,05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42번지 일원		1,052
주24	-	1,242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52번지 일원		1,242
주25	-	1,45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969번지 일원		1,450
주26	-	1,534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4번지 일원		1,534
주27	-	2,850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69-19번지 일원		2,850
주28	-	2,06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62번지 일원		2,065
주29	-	2,468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9번지 일원		2,468
주30	-	2,468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3번지 일원		2,468
주31	-	1,158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5-1번지 일원		1,158
주32	-	1,413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01-2번지 일원		1,413
주33	-	904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91-4번지 일원		904
주34	-	1,502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0-1번지 일원		1,502
주35	-	1,400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1-7번지 일원		1,400
주36	-	8,37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번지 일원		8,371 유수지4 중복결정
주37	-	3,131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6-6번지 일원		3,131
주38	-	1,157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30번지 일원		1,157
주39	-	1,111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60-12번지 일원		1,111
주40	-	1,116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421-2번지 일원		1,116
주41	-	1,107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27-1번지 일원		1,107
주42	-	2,849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산50-1번지 일원		2,849
주43	-	4,280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48-5번지 일원		4,280

13) 유주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205	1필지		1,205
유수4	-	1,205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63-2번지 일원		1,205

14) 우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908	2필지		2,908
오3	-	368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59-12번지 일원		368
오4	-	2,540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751번지 일원		2,540

15) 전기공급설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560	1필지		3,560
전2	-	3,560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79번지 일원		변전소

16) 유수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9,935	2필지		9,935
유수4	-	8,371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2-9 일원		저류시설, 주차장36 중복결정
유수5	-	1,564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615-4 일원		저류시설

17) 유보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7,242	1필지		7,242
유보1	-	7,242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178-2번지 일원		7,242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 및 특화주거용지

1)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7~11, 12-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li> <li>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층수 : 2층 이하(최고높이 : 해당 없음)</li> <li>건축물의 1층 전체를 높이 25m 이하의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용적률 및 최고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li> </ul>	
허용가구수	• 2가구 이하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2-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li> <li>점포겸용주택</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li> <li>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13m이하)	
허용가구수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계획시 4가구 이하)			
일반 단독주택 /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7~12	기타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단독주택의 지하층은 창고 및 기계실, 주차용도로만 설치 가능하다. (단,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로서 욕실 및 취사시설이 없는 취미실, 서재 등의 설치 허용)</li> <li>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지하층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지하1층 : 주거 또는 교육용도를 제외한 제1항에서 허용되는 시설 (단,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로서 욕실 및 취사시설이 없는 취미실, 서재 등의 설치 허용) 지하2층 이하 : 기계실 및 주차용도</li> <li>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전체를 기계실 및 주차용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타용도의 설치를 금지한다.</li> <li>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에 따라 조성한다.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해 허용하되, 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를 불허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li> <li>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가로로를 활성화하고 가로변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불허한다.</li> <li>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는 타용도로 일체 전환할 수 없다.</li> <li>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li> <li>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 단독주택 /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712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 외벽의 재료 및 형태</p> <p>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p> <p>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주거용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도로 또는 공원면에 면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단독주택용지의 외벽면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p> </li> <li> <p>• 1층 바닥높이</p> <p>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3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단, 1층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평균지반고 산정은 시행지침 &lt;그림II-1-2&gt; 평균지반고 산정 방법을 참고한다)</p> <p>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p> </li> <li> <p>• 지붕의 형태 및 높이</p> <p>단독주택용지에서는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관적으로 주변의 경사지붕과 조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평지붕으로 조성할 수 있다.</p> <p>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li> <li>2.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li> <li>3.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li> <li>4. 경사지붕으로 계획 시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평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평지붕 구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하되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로 사용 및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지붕형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li> </ol> <p>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로 사용 및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한다.</li> </o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 단독주택 /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712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및 옥상층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제외)</li> <li>• 담장, 대문, 계단                              대문 설치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 예외로 한다.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원에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하여야 한다.</li> <li>•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3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li> <li>•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가로형간판 또는 소형출출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ul>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차량 진 ·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 진 · 출입구는 획지 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예외로 한다.</li> <li>•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                              주거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필지 당 2대 이상’과 관련 시·군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거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관련 시·군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용도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으로 한다.</li> <li>•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는 「주차장법」 및 관련 시·군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ul>		

2)특화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화주거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H-1~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li> <li>•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li> <li>•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기타복리시설은 1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7호 주민공동시설(비영리 목적에 한함)에 한한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운하우스, 테라스하우스, 한옥마을, 에너지자립마을, 어반팜빌리지,</li> </ul>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해당 없음)
		주택규모 및 세대수	• 각 특화주거용지의 블록별 세대 수 및 공공용지율은 <별표-Ⅱ-2-가-1>를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6조 내지 제18조에 의거하여 계획·구성되어야 한다.</li> <li>• 주변 산세, 구릉지등의 지형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건축물이나 도로를 배치하여야 하며, 단지 경계 및 내부에 급경사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li> <li>• 불가피하게 사면 발생시에는 급경사 또는 수직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면은 수중, 식재구조, 기반토양등이 인접 식생지와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녹화 처리하여야 한다.</li> <li>• 자연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등 다양한 유형의 저층주거도입을 권장한다.</li> <li>• 구역내 건축선은 결정도를 따른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층수제한은 시행지침 표&lt;표Ⅱ-1-3&gt; 및 결정도를 따른다.</li> <li>• 테라스하우스의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테라스하우스 각 층의 지표면간 고저차가 3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상 고저차가 나는 층별로 개별층수로 산정한다.</li> <li>• 테라스하우스 배치시 기존지형의 경사도를 최대한 활용하되, 아래층 세대의 지붕이 윗층세대의 정원으로 이용되는 부분의 최소폭원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li> <li>•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3장’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인접 공원·수변공간등과 연계하여 보행동선 및 외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i> <li>•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ul>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내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li> <li>•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도입 또는 따를 것을 권장한다. 옥상 : 차열도료를 사용하고, 옥상 녹화처리 외벽면 : 벽면녹화처리 옥외주차장 : 잔디형 주차장 투수성 포장 등</li>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ul>		

<별표-Ⅱ-2-가-1> 특화주거용지 규모, 세대수, 공공용지율

도면번호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주택규모 (㎡)	공공용지율 (%)
합 계	186,813	395	-	-
H-1	27,975	59	330	30
H-2	106,160	225	330	30
H-3	34,550	73	330	30
H-4	18,128	38	330	30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A2~A11, B9~B21, C1~C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조업소 제외)</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Ⅱ-2-나-1>에 따른다.	
		용적률		
		높이		
		주택규모 및 세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획지별 주택규모는&lt;별표-Ⅱ-2-나-1&gt;를 따른다.</li> <li>• 각 획지별 세대수는 &lt;별표-Ⅱ-2-나-1&gt;를 초과할 수 없다.</li> </ul>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3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li> <li>• “담상형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4항’의 지침을 따른다.</li> <li>•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li> <li>•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6항’의 지침을 따른다.</li> <li>• “포인트주거동 배치”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7항’의 지침을 따른다.</li> <li>•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1항’의 지침을 따른다.</li> <li>•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획지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또는 “어귀마당”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나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li> <li>•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li> <li>•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높이의 2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 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li> </ul>	
		<옹벽 인접 주거동 조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에는 6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 2층 이하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A2~A11, B9~B21, C1~C2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의 형태 및 높이                              구릉지형을 활용한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경사지붕은 용미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가로비율 = 1:25 범위)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잔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 또는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에는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 사용 및 옥상녹화를 권장한다.</li> <li>• 담장, 대문, 계단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결정도상에 지정된 어귀마당의 진입부 및 연도형 배치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li> <li>•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IV편 제3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li> <li>•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IV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li> <li>•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시행지침 제IV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용지 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li> <li>•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li> <li>• 단지와 단지 및 공원녹지와와의 소통을 위하여 “어귀마당”, “단지 내 보행출입구” 및 인접 공원녹지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1개 이상 조성한다.</li> <li>• 단지 내 녹지는 인근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연결한 공원 및 녹지와 기능적·경관적으로 연계되도록 연결한 공원 및 녹지와와의 단차는 1.5미터 이내로 조성하며,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이 여유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완충녹지에 면한 구간의 조경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응하는 수림대 조성을 권장하며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통합적 조경계획을 수립한다.</li> <li>• 공공보행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연결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li> <li>•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li> <li>• “어귀마당”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 상에 “어귀마당”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당 최소1개소 이상, 단지의 차량 또는 보행 주 출입구에 조성한다.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I편 제1장 제12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A2~A11, B9~B21, C1~C2	교통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                          며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 진 ·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li> <li>•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li> <li>•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안동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2013)’에서 제시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보면수 (65㎡ 이하                          세대당 1.2대, 65㎡~85㎡ 세대당 1.5대, 85㎡이상 세대당 1.6대)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li> <li>•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크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지상 주차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                          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li> </ul>
		보행네트 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li> <li>•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 보관소 설치시 공기 주입기 및 공기압 측정기를 설치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li>•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li> </ul>

&lt;별표-Ⅱ-2-나-1&gt;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

블록 번호	획지 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주택 규모(㎡)	건폐율 (% 이하)	용적률 (% 이하)	최고층수 (층 이하)	평균층수 (층 이하)	비고
합 계			1,365,678	28,343						
A-2	1	60㎡이하	32,824	916	82	40	230	25	22	
	2	60㎡이하	36,331	1,014	82	40	230	25	22	
A-3	1	60㎡이하	30,755	858	82	40	230	25	22	
	2	60㎡이하	25,645	716	82	40	230	25	22	
A-4	1	60㎡이하	20,287	468	82	40	190	25	18	
	2	60㎡이하	33,883	782	82	40	190	25	18	
A-5	1	60㎡이하	39,913	1,114	82	40	230	25	22	임대
	2	60㎡이하	63,294	1,767	82	40	230	25	22	임대
A-6	1	60㎡이하	38,693	1,080	82	40	230	25	22	
	2	60㎡이하	21,479	600	82	40	230	25	22	
A-7	1	60㎡이하	47,605	1,102	82	40	190	18	-	임대
A-8	1	60㎡이하	23,197	536	82	40	190	18	-	임대
A-9	1	60㎡이하	54,685	1,460	82	40	220	25	22	임대
A-10	1	60㎡이하	20,642	476	82	40	190	25	18	
	2	60㎡이하	29,163	674	82	40	190	25	18	
A-11	1	60㎡이하	26,424	514	82	40	160	25	15	
	2	60㎡이하	24,896	486	82	40	160	25	15	
B-9	1	60㎡~85㎡이하	48,206	986	112	40	230	25	22	임대
B-10	1	60㎡~85㎡이하	47,857	808	112	40	190	25	18	
	2	60㎡~85㎡이하	21,287	360	112	40	190	25	18	
B-11	1	60㎡~85㎡이하	41,794	744	112	40	200	25	22	
B-12	1	60㎡~85㎡이하	36,666	652	112	40	200	25	22	
B-13	1	60㎡~85㎡이하	56,416	1,108	112	40	220	25	22	
B-14	1	60㎡~85㎡이하	30,038	428	112	40	160	25	15	
B-15	1	60㎡~85㎡이하	52,725	894	112	40	190	25	18	
B-16	1	60㎡~85㎡이하	58,415	1,146	112	40	220	25	22	
B-17	1	60㎡~85㎡이하	54,673	1,070	112	40	220	25	22	
B-18	1	60㎡~85㎡이하	64,450	1,264	112	40	220	25	22	
B-19	1	60㎡~85㎡이하	71,949	1,220	112	40	190	25	18	
B-20	1	60㎡~85㎡이하	34,239	488	112	40	160	25	15	
B-21	1	60㎡~85㎡이하	43,724	624	112	40	160	25	15	
C-1	1	85㎡초과	50,392	682	140	40	190	25	18	
C-2	1	85㎡초과	83,131	1,306	140	40	220	25	22	

주)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p>	<p>근생14~41</p>	<p>용도</p>	<p>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절탐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li> </ul>
		<p>불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를 활성화하고 가로변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불허</li> </ul>
		<p>건폐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하</li> </ul>
		<p>용적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 이하</li> </ul>
		<p>높 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li> </ul>
		<p>배치 및 건축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li> <li>•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li> <li>•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li> </ul>
<p>형태 및 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의 재료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외벽면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li> <li>• 1층 바닥높이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3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li> <li>•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근생14~41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및 옥탑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옥상 및 지붕은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 또는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에는 미세먼지·열섬 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 사용 및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실외기, 안테나 등의 설치 시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li> <li>• 담장, 계단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li> <li>•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3장'의 지침을 따른다.</li> <li>•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li>•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 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과 투수성이 있는 포장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결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li> </ul>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기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 당 1개소만 허용한다.</li> <li>•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근린상업 지역, 일반상업 지역)	상22~ 상3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카지노영업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를 활성화하고 가로변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불허</li> </ul>		
		해당블록	상25~34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2층 이상, 최고층수 : 7층 이하(최고높이 : 30m 이하)		
		특화상업 시설  (근린상업 지역)	특상11~ 특상1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부 보행친화형용도(카페·베이커리 등 식음시설, 공방, 갤러리 등 전시·판매점, 서점·기념품점·의류점 등 소매점) 권장</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를 활성화하고 가로변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불허</li> </ul>					
해당블록	특상11~12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2층 이상, 최고층수 : 5층 이하(최고높이 22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일반 업무시설 (준주거 지역)	업38~39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과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38,39</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층수 : 2층 이상, 최고층수 : 7층이하 (최고높이 : 30m이하)</li> </ul>	
		공공 업무시설 (준주거 지역)	업40~41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업무시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li> </ul>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40,41</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층수 :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이하 (최고높이 : 45m 이하)</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상업 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상22~ 상34, 특상11~ 특상12, 업38~ 업41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li> <li>• 대지의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에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li> <li>•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의 주 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li> <li>•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li> <li>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li> <li>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li> </ul> </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바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li> <li>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3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li> </ul> </li> <li>•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업용지중 일부구간은 건축물에 의한 가로경관의 폐쇄감 완화 및 가로공간의 입체적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1층 벽면지정선(의무)을 지정한다.</li> </ul> </li> <li>• 외벽의 재료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li> </ul> </li> <li>• 지붕의 형태 및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li> <li>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li> <li>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및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li> <li>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며, 환기구가 노출 경우에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최소 2.5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li> <li>•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li> </ul> </li> </ul> </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상업 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상22~ 상34, 특상11~ 특상12, 업38~ 업41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장, 대문, 계단 담장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gt;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IV편 제3장’의 지침을 따른다.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1. 광고물의 조성시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주 상호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사항은 시행지침 제IV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ul>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li> <li>• 대지 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li>•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교통영향평가’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li> <li>•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m<sup>2</sup> 당 0.1분을 식재하여야 함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m<sup>2</sup> 당 0.1분을 식재하여야 함</li> <li>• 대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III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ul>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공청사 (제2종 일반주거 지역)	공청5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바목 내지 아목</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비목, 이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허목</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건축물 1층부는 민원상담 등 공공지원기능 및 라운지·카페 등 시민에게 개방된 보행친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li>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이하에 한한다.</li> </ul>
		해당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청5</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 이하</li> </ul>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0m이하)</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도시 개념 구현을 위해 한국적 전통 디자인의 건축물 재료, 색채, 가로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등 ‘시행지침 제I편 1장 제15조’의 도입을 권장 한다.</li> <li>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ul>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li> <li>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li> <li>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전면공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에 의해 전면공지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li> <li>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li> <li>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청사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공청사 : 30% 이상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li>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III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ul>

2)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커뮤니티 시설 (일반상업 지역)	커2,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학원, 도서관</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li> <li>• 부속용도로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부속용도로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건축물 1층부는 민원상담 등 공공지원기능 및 라운지·카페 등 시민에게 개방된 보행친화시설의 설치 권장</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li> </u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최고높이 : 30m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li> <li>•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역사도시 개념 구현을 위해 한국적 전통 디자인의 건축물 재료, 색채, 가로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등 ‘시행지침 제 I 편 1장 제15조’의 도입하여야 한다.</li> <li>•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복합커뮤니티용지중 일부구간은 건축물에 의한 가로경관의 폐쇄감 완화 및 가로공간의 입체적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1층 벽면지정선(의무)을 지정한다.</li> <li>•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li> </ul>
		대지내 공지	•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li> <li>•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li> <li>•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상에 전면공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차량 진출입구에 의해 전면공지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li> <li>•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li> <li>•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복합커뮤니티시설 : 30% 이상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ul>

3)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유4~ 유8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li> <li>부속용도로서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li> <li>부속용도로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의 유치원은 주 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 설치하여야 한다.</li> </ul>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4층 이하	
학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초3~ 초8 중2 중5 고2,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li> </ul>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5층 이하	
유치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유4~ 유8	배 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를 권장하며, 일조 및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li> <li>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li> <li>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li> <li>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li> <li>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IV편 제3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한다.</li> <li>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IV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li>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III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li>교육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학교 및 유치원 : 30% 이상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ul>
학교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초3~ 초8 중2 중5 고2,3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은 가급적 장축방향으로 배치를 권장하며, 일조 및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li> </ul>	

4)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시설 (일반상업지역)	문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설소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 관람장(체육관 및 운동장에 한정한다), 전시장</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차고 및 주차장에 한함)</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에 한함)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층수 7층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역사도시 개념 구현을 위해 한국적 전통 디자인의 건축물 재료, 색채, 가로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등 ‘시행지침 제I 편 1장 제15조’의 도입하여야 한다.</li> <li>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하천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III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li>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ul>

5) 청소년수련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소년 수련 시설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청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부속용도</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가목 내지 다목</li> <li>•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마목</li> <li>•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아목, 카목(직업훈련소에 한정한다), 파목(옥외철담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층수 4층 이하</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하천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li>•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ul>

6)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체육 시설 (자연녹지 지역)	체육1~ 체육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파목</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마권관련시설 제외), 다목(체육관 및 운동장에 한정한다), 라목</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li> <li>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 바목, 사목, 자목(안마원 제외)</li> <li>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타목, 하목</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장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li> </ul>
		해당블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육2,3</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층수 4층 이하</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li> <li>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하천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할것을 권장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li>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ul>		

7) 테마파크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테마파크 (자연녹지 지역)	테마1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라목, 바목 내지 자목, 차목(장외사 제외), 카목, 타목, 파목(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러목(안마시술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나목(마권관련시설 제외), 다목(체육관 및 운동장에 한정한다), 라목, 마목</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시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층수 4층 이하</li> </ul>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파크용지는 주변 산세, 구릉지등의 지형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건축물이나 도로를 배치하여야 하며, 단지 경계 및 내부에 급경사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li> <li>• 불가피하게 사면 발생시에는 급경사 또는 수직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면은 수중, 식재구조, 기반토양이 인접 식생지와 생태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녹화처리하여야 한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하천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1용지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단, 임상양호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에서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조경시설, 자연체험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li>•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ul>

## 8) 종합의료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합 의료시설 (자연녹지 지역)	의1,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에 따른 종합의료시설</li> <li>「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 에 따른 종합병원</li> <li>「의료법」 제49조의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층수 15층 이하</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의료시설은 호민지의 경관을 고려하여 호민지와 면한 입면은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하여야 한다.</li> <li>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li> <li>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최소 2.5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li> </ul>	
		교통처리 및 부설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르되,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 내에서 2개소 이상 확보하여, 외래 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li> <li>차량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도로 모퉁이에서 3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li> <li>대지 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li>의료시설의 주차장은 외래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호민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1용지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단, 임상양호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에서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조경시설, 자연체험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li> <li>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li>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ul>			

9) 한옥형 호텔 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6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6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7층 이하(최고높이 : 40m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 건축물배치를 하도록 한다.</li> <li>•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형 호텔은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 외관을 조성한다. 단,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li> <li>• 한옥형 호텔 개념 구현을 위해 한국적 전통 디자인의 건축물 재료, 색채, 가로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등 ‘시행지침 제 I 편 1장 제15조’를 도입 한다.</li> <li>•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li>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li> <li>•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i> <li>•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li> <li>• 지붕 및 옥상은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 조성하며, 한식지붕에는 전통경관 형성 및 지붕틀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li> <li>•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식재 등으로 차폐하여야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최소 25미터 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li> </ul>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 및 ‘시행지침 제I편 제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gt;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호민지에 면한 대지의 경우에는 수변공원 내의 보행네트워크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li> <li>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할것을 권장한다.</li> </ul>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li> <li>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둘 수 없다.</li> <li>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교통영향평가’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3.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li> <li>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m<sup>2</sup>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함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m<sup>2</sup>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함</li> <li>호텔2용지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상양호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에서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조경시설, 자연체험시설, 산책로 등을 설치할 수 있다.</li> <li>한옥형 호텔의 세부사항은 ‘4.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따른다.</li> </ul>

10) 복합물류센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복합 물류센터 (준주거 지역)	물류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li> <li>•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li> <li>• 부속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li> <li>• 부속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다중생활시설 제외)</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이하에 한한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층수 5층 이하</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li> </ul>	
		보행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li> <li>•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한다.</li> <li>•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li> <li>•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li> </ul>	

11)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종5,6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불안당 제외)</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유자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한다.</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 이하</li> </ul>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24m이하)</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자연형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li> <li>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차열도료를 사용토록 하며,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li> <li>건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상층의 부대시설 및 공작물(침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li> <li>침탑에는 네온, 백열등 등 직접방식 또는 점멸식의 조명장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li> <li>침탑의 소재 및 색채는 하단부의 외벽재료와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거지 등 시설과 조화롭게 처리하여야 한다.</li> <li>다음의 경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높이 규정에서 제시한 최고 높이에서 9m 추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최고 높이는 옥상층 부대시설을 포함한 높이이다.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최상층에 경사지붕(물매7/10이상)을 설치하는 경우</li> </ul>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시설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한다.</li> <li>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li> </ul>	
교통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li> <li>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규정된 설치기준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지상주차장은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잔디형 주차장 등)를 사용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한다.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 설치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 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li> </ul>			

12)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주23~주43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의 20%이하에 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li> <li>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li> <li>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li> <li>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li> </ol> </li> </ul> </li> <li>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li> </ul>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li> </ul>			
		해당블록	• 주 23,26,31,33,34,38,4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주 32,35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 27,30,42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 주 36,37,43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 5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180% 이하	• 400% 이하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2층 이하	• 최고층수 3층 이하 • (최고높이:15m이하)	• 최고층수 7층 이하 • (최고높이:27m이하)	• 최고층수 1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li> <li>•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 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이용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부속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속시설의 배치는 위계가 낮은 도로변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대지의 각각부에 위치하지 못한다. 단, 전면도로가 1개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li> <li>•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li> <li>•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li> <li>•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li> </ul>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li> <li>•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li> <li>•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li> </ul>				

13) 주유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자연녹지 지역)	주유4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li> <li>•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li> </ul>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미세먼지·열섬현상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도입을 권장한다.</li> <li>•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li> <li>•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li> </ul>	

14) 기타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중계 펌프장 (준주거 지역, 자연녹지 지역)	오3,4	용도	허용	•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전기공급 시설 (자연녹지 지역)	전기2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2층 이하	
유수지 (자연녹지 지역)	유수4,5	용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제2호의 저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1층 이하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공공 보행통로	<p>•“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p> <p>공공보행통로는 결정도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의 시종점 및 내부 선형 변경이 가능하다.</p> <p>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한다.</p> <p>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p> <p>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벤치 등 보행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이 가능하다.</p> <p>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공공보행통로는 상부가 오픈되는 형태를 권장한다. 다만, 용적률 확보 및 건축물의 미관향상 등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필로티형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필로티형으로 조성시 지상부 보행자를 위한 유효높이는 최소 3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p>
단지내 보행 출입구	<p>•“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p> <p>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p> <p>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p> <p>단지 내 보행출입구는 결정도상 표시된 위치를 준수하도록 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p>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 우선구조	<p>•“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p> <p>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p> <p>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p> <p>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p>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용 지 (용도지역)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한옥형 호텔 (일반상업 지역)	호텔2	지정목적	•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미지 구현
		지정대상 개요	•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 면적 : 38,914㎡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사업계획의 심의	•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발밀도	•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밀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발용도	•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용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지정	• 구역내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p>•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결정도에 별도 도면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와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p>‘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공지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정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li> <li>-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li> <li>-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li> <li>-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li> <li>- 전면공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 및 녹지와 연접하였을 경우 연접한 공원과 유사하게 조경처리를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li> </ul>
공개공지	<p>“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p> <p>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p> <p>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li> <li>-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li> </ul>

구분	조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단, 침상형 공개공지는 예외로 한다.</li> <li>-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li> <li>- 공개공지에 페이빙이나 도입하고자하는 공간의 연출방법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의 ‘한국적 전통디자인’을 적용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기능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한다.</li> <li>-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편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li> <li>-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li> </ul>
공공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li> <li>•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아래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li> <li>-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li> </ul> </li> </ul>

5]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붙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

II.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음)